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2000. 12

연구위원 김 문 현

연구원 김 란 영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序 言

우리 나라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현저히 변화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종래에 생각하기 힘들었던 계열이나 업태를 초월한 기업끼리의 합병 등 M&A, 대기업을 산하로 하는 지주회사화와 분사화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대외적으로 급격한 정보화와 날로 거세지는 경쟁, 국제화에 수렴해 가는 경영방식 등 변모해 가는 경영패러다임에 적응하고, 대내적으로 신속한 구조조정과 기업경영의 효율성 증대,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제에 의한 사업의 재구축이나 기업재편에 있어서는 기존 제도의 틀 속에서는 그 추진에 충분히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 제도 중 법률과 회계의 양 제도에 있어서 기업의 그룹경영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그 때문에 일련의 제도개혁을 기업이 실제로 활용해 가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회계의 개혁에 더하여 세제개혁이 뒤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조류에 발맞추어 본 보고서에서는 그룹연결경영을 지탱하는 중요한 하나의 제도적 인프라인 연결납세제도에 대하여 개괄하였다.

우선 최근 도입된 지주회사제도와 관련된 과세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 등 앞서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유형을 알아봄으로써 우리 나라에 적합한 연결납세제도의 방식을 검토하였다. 또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진의 노력이 향후 연결납세제도의 정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김문현 박사의 노고를 통해 작성되었다.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자료수집과 원고작성에 도움을 준 김란영 연구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0년 12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 운 열

목 차

I.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3
1.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3
2. 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와의 관계	12
II. 지주회사와 연결납세	21
1. 기업조직의 형태와 조세의 중립성	21
2. 대규모기업집단제도와 지주회사제도	25
3. 지주회사의 과세문제	36
III. 외국의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49
1.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49
2.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51
3. 프랑스의 연결납세제도	66
4. 영국의 연결납세제도	73
5. 독일의 연결납세제도	79
6. 각국의 연결납세제도의 요약	84

IV. 연결납세제도 관련 주요 과제89

- 1. 연결납세제도 유형의 선택89
- 2. 연결납세 적용범위90
- 3.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의 이연96
- 4. 이월결손금101
- 5. 투자수정111
- 6. 기타 과제117

V. 연결납세제도 도입 방안137

- 1. 연결납세제도 유형 및 연결의 범위137
- 2. 과세이연 및 소득공제143
- 3. 기타 검토사항145

참고문헌151

<부록>155

- 1. 세법의 결손금 관련 규정155
- 2. 미국의 연결납세 규정161

표 목 차

<표 I-1> 연결납세제도와 연결재무제표	16
<표 I-2>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	17
<표 II-1> 자회사화와 사업부제의 비교	21
<표 II-2> 30대 그룹에 대한 직접적 규제	29
<표 II-3> 30대 그룹에 대한 부수적 규제	30
<표 II-4>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	31
<표 II-5>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제도	34
<표 III-1> 주요국의 연결납세제도 비교	84
<표 IV-1> 연결납세제도의 주요 검토사항	134

그림 목 차

<그림 II-1> 사업부제와 자회사화의 납세	24
<그림 III-1> 주요국의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50
<그림 III-2> 미국 법인세의 계산과정	52
<그림 III-3> 미국 법인세 신고서의 개요	53
<그림 III-4> 미국의 연결납세소득 및 연결세액 산출 과정	55
<그림 III-5> 프랑스 법인세의 개요	67
<그림 III-6> 프랑스의 연결납세소득 및 연결세액 산출 과정	69
<그림 III-7> 영국 법인세의 개요	74
<그림 III-8> 영국 기업집단세제의 분류	76
<그림 III-9> 독일 법인세의 개요	80
<그림 III-10> 독일의 연결납세제도(기관제도)	82

1.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1.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2. 연결재무제표 · 결합재무제표와의 관계

I.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1.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가. 연결납세제도란?

연결납세제도는 자본적으로 결합된 기업집단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연결그룹내의 각 각 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법인세액을 산정하는 납세제도이다. 현행의 법인세가 법률상의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데 반해 연결납세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동일한 기업실체를 과세단위로 한다.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으로 하나인 모회사의 공정한 법인세부담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며, 소득금액을 과세단위(담세력)로 한다는 점에서 법인세의 취지에 부합된다. 연결납세제도는 개개의 법인격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받아들이는 법인세법의 전제에서 경제적인 실체와 일체성을 중시하는 과세로의 변화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¹⁾

연결납세제도하에서 과세는 연결그룹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므로, 연결그룹내 각 기업의 소득을 통산하고 내부거래손익은 연결그룹외부와 거래시점까지 이연한다.

1) 연결납세제도는 법인과세의 과세단위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과세단위를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부부 또는 가족단위로 확대하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전자가 소득의 합산에 초점을 맞춘 반면, 후자는 소득의 통산을 통한 결손의 흡수에 초점을 두고 있다.

4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1) 소득의 통산

연결그룹 전체의 담세력은 연결그룹내 각 사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액을 통산하여 산정된다. 즉, 연결그룹 전체의 세부담은 연결그룹내 각 기업의 통산소득에 기초한다. 특정 기업의 결손은 소득의 통산과정에서 흡수되므로 연결그룹 전체로서는 절세효과가 있다.

[사례]

기업은 A, B 두 개의 부문을 두고 있는데, A부문의 가, 나 공정을 차례로 거친 제품은 B부문을 거쳐 판매된다. A부문의 전체 매출은 5,000이며, 원가는 4,500으로 이익은 500이다. B부문에서는 300의 손실이 발생하여 기업전체로는 200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세율은 30%이다.)

구분	A부문		B부문	합계
	가공정	나공정		
매출	3,800	5,000	3,000	8,000
원가	3,500	4,800	3,300	7,800
이익	300	200	-300	200

- A부문의 가공정에서 나공정으로의 사내 대체가격은 3,800 인데, 이를 4,200으로 조정하면 가, 나 공정의 이익은 각각 700과 -200이다.
- 위 예에서 가공정, 나공정, B부문의 이익은 각각 300, 200, -300 이므로 법인세는 각각 90, 60, 0이 된다.2) 지주회사 전체로는 세부담이 150이 되는 것이다.

2) 손실이 난 B부문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에서 각 부문을 사내에 유지할 경우에는 기업 전체로는 이익 200에 법인세 60으로 차이가 없으며 단지 사내대체가격의 차이로 인해 부문간 수익성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각 공정과 부문을 가령 지주 회사하의 별도의 자회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기업그룹 전체로는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부문화 또는 분사화라는 조직형태 상의 차이외에 경제적 실질면에서는 위 두 경우에 차이는 없다. 그러나, 조직형태의 차이에 따라 담세력이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단위의 과세체계하에서는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연결법인세제는 연결그룹내 기업의 소득과 결손을 통산하는 제도로써 연결그룹전체의 관점에서 세부담을 측정한다. 위의 사례에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를 할 경우에는 그룹전체로는 세부담이 기업내 부문으로 유지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게된다.

2) 내부거래손익의 과세이연

그룹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내부이익은 그룹외의 거래를 통해 실현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즉,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 등에 포함되는 내부미실현이익은 연결납세신고에서 제거된다. 연결그룹 전체를 하나의 실체로 보기 때문에 연결그룹내 기업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간주되고 과세되지 않는다.

6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사례]

연결납세신고를 채택하고 있는 모회사는 장부가액 1,000의 보유자산을 1998년도에 자회사에 1,300에 매각하였으며, 자회사는 이 자산을 1999년도에 연결그룹 외부에 1,500에 매각하였다.

— 1998년

- 자회사 : 자산을 취득원가 1,300으로 계상한다.
- 모회사 : 자산의 양도에 따라 양도차익 300이 발생하지만, 이는 연결그룹내 내부거래이므로 과세하지 않는다.

— 1999년

- 자회사 : 자산의 양도이익 200에 대해 과세한다.
 - 모회사 : 1998년에 자회사에 매각한 자산이 연결그룹 외부로 양도되었으므로, 1998년에 이연된 양도이익 300에 대해 과세한다.
-
-

위 사례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양도손익은 동 자산이 연결그룹 외부로 양도되는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즉, 내부거래손익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과 비교할 때 과세시점 상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연결납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산을 양도한 시점에서 양도익 300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자회사에 대해서는 동 자산을 매각한 시점에서 양도익 200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를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하면, 모회사의 양도익 300에 대한 과세시점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연결납세제도의 필요성

1) 연결 경영의 기반

연결경영이란 개별 기업의 경영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인식되는 기업그룹 전체의 경쟁력확보와 그로 인한 수익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행위이다.

기업그룹 전체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M&A, 분사화, 지주회사 설립 등의 사업재구축 및 기업재편이 연결경영의 예라 할 수 있다.³⁾ 주지하다시피 몇몇 기업집단의 구체적인 경영행태에 대해 금융자본시장이 관련 계열사 전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룹전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인식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기업의 연결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는 관련 법률, 회계, 조세 등이 있다. 각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기업경영 자체가 연결경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법률, 회계 그리고 세(稅)라는 제도 인프라는 기업의 그룹연결경영에의 이행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 제도, 연결재무제표 등과 더불어 연결납세제는 연결경영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정보 공개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경영자의 그룹경영에 대한 의식을 비약적으로 높일 것이다.

2) 과세 중립성의 제고

현행 세제에 의하면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은 모회사의

3) 물론 위법·부당한 계열경영의 현상은 제도적으로 수용된 것이 아니다.

8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사업부문에서 행하는 것과 자회사에서 행하는 것 사이에는 정보공시는 연결기준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법인세액에 차이가 있다.⁴⁾ 이에 대해 과세가 부문 및 분사화 등의 기업조직의 형태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결납세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동일기업의 내에서 이루어지던 개발, 생산, 판매 등의 활동이 분사화를 통해 각 자회사에 분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담세력의 증가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마치 기업내에서 자산의 이전이 이익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다.

회계제도에 비하여 세제면에서의 개혁이 지연되면 회계단위와 과세소득단위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기업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3)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정합성 제고

법인과세의 실효세율이 국제수준과 동등하지 않을 경우 세제는 오히려 기업활동의 활성화·효율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즉, 경쟁기업이 연결납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세제는 중요한 경쟁력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단순히 법인세제 개혁 내에서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미 주요국과의 세제면에서의 국제적인 협조와 경쟁을 고려하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경영과 관련되어 있다.

4) 자회사들이 모두 이익만 내는 경우라도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단일세율이 아니며 또 각종 공제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다른 제도의 유효성 제고

각종 법률과 회계의 각 분야에 있어서 기업의 연결경영과 경제상태를 근거로 한 환경정비가 진전되는 반면 세제면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연결재무제표와 지주회사 형태의 기업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연결납세제의 도입은 다른 제도의 유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 연결납세제도의 장단점

연결납세제도의 장점은 앞서 살펴본 연결납세제도가 요청되는 그 필요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반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세수의 감소, 조세회피의 가능성 증가 등이다. 뒤에서 살펴 보겠지만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때 연결납세제도의 단점을 최소화 하면서 그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각 검토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검토사항별 도입방안을 논의할 때 이러한 장단점이 비교기준이 된다.

1) 장점

가) 연결그룹내 결손금의 흡수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을 통산하는 과정에서 연결그룹내 기업 결손금을 흡수할 수 있다. 즉, 한 자회사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다른 그룹내 회사의 소득에서 공제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세가 감소하게 된다.

10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나) 조세의 중립성 제고

법률상의 법인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현행제도하에서는 가령 자본적인 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익통산을 할 수 없다. 당초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신규사업이면 자회사화하는 경우와 사업부제를 채용하는 경우 세부담이 현저히 다르게 되는 것이다. 연결납세제는 조직형태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를 줄여준다.

다) 기부금과세나 증여이익과세 배제

모회사의 자회사로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그룹외부에 동 자산이 유출되는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므로 모회사와 자회사의 거래에 관해서 저액양도 및 고액양도 등에 의한 세무당국과의 분쟁이 회피된다. 연결그룹내 각 기업의 소득이 모두 통산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

2) 단점

가) 세수의 감소

기업의 손실이 연결그룹내 기업의 이익에 의해 통산되면 개별 기업에 대한 과세에 비해 세수는 감소하게 되며, 기존 기업집단내의 기업들이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세수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기업내 사업부가 분사화를 통해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연결납세는 당연하며 세수감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론 또한 있다. 더욱이 연결납세의 대상을 100% 소유의 자회사로 한정한다면 세수감의 우려는 제도도입의 반대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수감에 대한 대책으로 재원확보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임의적용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감을 고려하여 부가세를 부과한 바 있다⁵⁾.

나) 조세회피 가능성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연결대상이 되지 않은 관계회사와의 거래나 연결그룹에서의 이탈 등에 의한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조세회피행위는 과세의 공평이나 실질적인 과세를 저해하며 세수감의 원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납세 외부기업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거래를 인정과세 하거나 연결납세 대상에의 가입 또는 이탈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다) 연결납세에 관련된 업무부담의 증가

연결납세의 사무의 흐름은 기본적으로는 모회사를 중심으로 행하여 지는 것이지만 각각의 연결자회사에서의 처리를 모회사에 보고하여 연결납세에 관한 처리를 모회사가 일괄한다. 이에 따라 업무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라) 현행 세제와의 정합성

현행 법인세법의 결손금의 이월공제제도에 의해 결손금은 그 법인의

5)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시행초기에 연결납세를 선택하는 기업들은 개별 납부시에 부과되는 법인세율에 2%할증세율을 가산하여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제하여 연결납세의 법인세 감소효과를 낮추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1957~1964년 법인세의 중복감면만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철회되었다.

12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과세소득 계산상 다음연도 이후에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이는 개별 법인을 전제로 한 것으로 연결납세의 경우에는 연결그룹 차원에서 결손금을 이월하는 것으로 그룹에 가입 또는 탈퇴에 의해 조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인세제는 기부금이나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 및 각종 조항의 적용 한도 또는 제한 등에 대해서 개별 법인에 대한 과세를 전제로 여러가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이들 현행의 법인과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마) 기타

연결납세도의 도입시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의해 조세제도가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며, 세무조사 및 그에 대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아울러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등에 대해서도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2. 연결재무제표 · 결합재무제표와의 관계

연결납세제도 및 연결재무제표제도는 자본 등의 관련성에 따라 기업그룹을 경제적으로 일체로 본다는 점에서 같다. 순수지주회사의 허용,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의 적용 등은 기업그룹 전체를 기업의 경제활동단위로 인식하는 것이다.

제도간에는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으나, 개별기업이 아니라 그룹으로서의 기업집단을 과세단위로 보는 것에 일면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개 기업그룹의 회계처리 등에 있어서 양자에 있

어서의 그 범위 등은 다르지만, 기술적으로는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연결재무보고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수익성에 대한 일반적인 목적의 보고인데 반해 연결납세는 적정한 과세산정에 대한 특정인(정부)을 위한 보고이므로 양자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음은 양자의 일반적인 비교내용이다.

가. 연결의 목적

연결재무제표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2이상의 회사로 이루어지는 기업집단을 단일의 조직체로 간주하고 모회사가 그 기업집단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된다. 반면, 연결납세제도는 개별신고를 기초로 연결납세신고에 있어서 조정을 하여 연결그룹 전체에서의 조세부담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결납세신고의 목적은 연결과세소득이라는 손익의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대차대조표항목에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나. 연결의 범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지분기준'과 '지배력기준'이 있다. 전자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며, 후자는 의결권이 과반수에 미치지 않더라도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회계기준은 지배력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때 실질적 지배란 모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판정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14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반면, 연결납세의 연결범위로 사용되는 기준은 '지분기준'이며, 이때 지분은 연결재무제표의 지분보다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연결재무제표와 달리 연결납세제도는 연결그룹 소득을 기준으로 그 세금부담능력을 판단하는 것이다. 양자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연결범위가 양자간 같을 이유는 없다. 외국의 경우에도 연결납세에서 연결범위는 국가간 차이가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와 다르다.

다. 연결소득

연결납세신고에 있어서의 연결소득은 개별신고와 같이 기업이익으로부터 유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상의 이익금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연결재무제표와 같이 내부이익을 제거하지만 연결소득산정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손익계산에 중점을 둔다.

라. 소수주주지분

연결재무제표에 있어서는 소수주주지분은 중요한 요소로, 자회사지분에 대해서는 부채로 보는 입장(지배회사이론, parent company theory)과 자기자분으로 보는 입장(실체이론, entity theory)이 있다. 연결납세제도에 있어서의 연결소득의 계산에서는 소수주주의 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수주주의 보호차원에서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대상에 비해 연결납세의 대상은 범위가 작다.

즉, 연결납세는 가령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자회사등의 지분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그 자회사등의 손익의 전액이 연결납세신고에 포함되며 과세소득의 계산상 소수주주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는 않는다.

연결납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개별회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모회사는 대리인의 입장에서 연결납세업무를 수행할 뿐이며, 모회사 및 자회사 각각은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⁶⁾

마. 회계기준 및 회계기간의 통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회계기준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 기업간 상이한 회계기준에 의한 평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결납세의 경우에는 회계기준의 일치가 필요하지 않다.

연결의 범위내의 기업간에 회계기간이 다르더라도 연결재무제표의 회계기간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연결납세의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기간의 일치가 필요하다. 동일한 납세기간이 아닌 경우를 대상으로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결납세제도와 연결재무제표를 비교하면 <표 I-1>과 같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대상 및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결합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의 대상범위를 확장하고 작성방법을 간편화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수정한 형태라 할 수 있다.

6) 프랑스의 경우에는 모회사가 연결납세의 납세의무자이며, 개별회사는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

<표 1-1> 연결납세제도와 연결재무제표

구분	연결납세제도	연결재무제표
본래의 목적	적정한 과세소득 산정 (실질적 세부담)	기업의 재무정보 제공
연결목적	기업집단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불능력을 파악하고 공 정·중립적인 과세	기업집단의 재무정보를 이해관계자에 제공
필요성	세의 중립성 실질적인 과세	적정한 정보공시의 담보 분식결산의 방지
대상	국내의 자회사 (과세권의 범위)	국내외 자회사
대차대조표의 필요성	원칙은 불필요	필요
국제기준	국가별 차이	국제회계기준
소수주주의 처리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지분처리
회계기준의 통일	불필요	필요
회계기간의 통일	간소화를 위해 필요 (개별손익대체형 : 불필요)	불필요
검사기관	세무당국	외부감사인

<표 1-2>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

구분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연결범위	실질적인 경영지배력기준	실질적인 경영지배력기준
작성대상 범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국내외의 영리 및 비영리법인	결합대상기업집단(30대기업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국내 및 해외계열회사
작성자	최상위 지배회사	기업집단체열회사 중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
작성이론	실체이론 중심	실체이론 중심
이해관계자	연결실체의 모든 이해관계자	기업집단의 모든 이해관계자
외부주주 지분	별도의 과목으로 구분하여 자본항목으로 표시	별도의 과목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결합실체의 자본 구성
내부거래	전액제거	전액제거
내부미실현 손익 제거	하향판매의 경우에는 전액하고, 상향판매의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 지배회사지분과 외부주주지분에서 각각 제거함	전액제거
종속회사 자산·부채 평가	공정시가	공정시가

II. 지주회사와 연결납세

1. 기업조직의 형태와 조세의 중립성
2. 대규모기업집단제도와 지주회사제도
3. 지주회사의 과세문제

II. 지주회사와 연결납세

1. 기업조직의 형태와 조세의 중립성

기업규모가 커지고 사업다각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영조직은 일반적으로 「소기업 → 대기업 → 사업부제 → 사내분사제(컴퍼니제) → 사업지주회사 → 순수지주회사」의 형태로 진화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 및 이익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장이나 고객의 needs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그리고 신사업 및 신분야에의 진출이나 그룹력의 강화, 본업의 강화 등의 이유에서 기존의 사업부문을 자회사화하거나 합병·분할 등의 조직개혁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표 II-1> 자회사화와 사업부제의 비교

구분		자회사화	사업부제
기업경영	독립성 및 경영자의식	강함	약함
	기업평가	쉬움	어려움
	기업활동	탄력적	비탄력적
	해산·청산 등	쉬움	어려움
	양도·분리 등	주식양도	영업양도
	권한의 위양	큼	적음
종업원	종업원의 동기부여	높음	낮음
	종업원의 급여체계 및 노동조건	모회사와 다름	동일함

사업부제를 채택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의 손익에 대해서는 그 각 사업부에서 손익통산한 소득으로 신고한다. 현행의 세제는 법인격의 단위로 소득금액을 파악하므로 하나의 사업부서의 적자는 다른 사업부의 흑자와 손익통산된다. 반면, 사업부를 법인격을 지닌 자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독립하여 신고·납부하게 된다.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인 실체라는 관점에서 현행의 세제와 다르다. 즉,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기업집단이라고 보고 그 경제적 실체를 과세단위로 하는 것은 소득금액을 담세력으로 보는 것이 연결납세의 입장이다. 따라서, 종래의 모회사와 자회사의 과세문제로 납세자는 종종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실체이므로 그 사이의 자산 등의 이동을 기부금(증여)이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주장도 있다.

법인의 소득이 음(-)인 경우 담세력을 음으로 판단한다면 세금도 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음의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불하는 대신 그 기업에 대해 기간간 세를 공제해 줄 수 있다. 즉, 기간간 소득을 통산하여 담세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소급해서 세를 환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기간은 미래 소득공제에 비하면 그 기간은 짧은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의 사례는 기업의 특정 부문을 유지하는 경우와 분사화할 경우의 과세문제에 관한 것이다. 100% 자회사의 경우라면 특정부문의 사내외 유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실질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즉, 담세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으므로 기업은 동일한 세부담을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세제는 법인별 과세를 하고 연결납세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 세부담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회사	소득	과세소득	
		사업부제의 경우	연결납세의 경우
모회사	500	600 (500-100+200)	500
A 자회사	△100		0
B 자회사	200		200
그룹의 소득		600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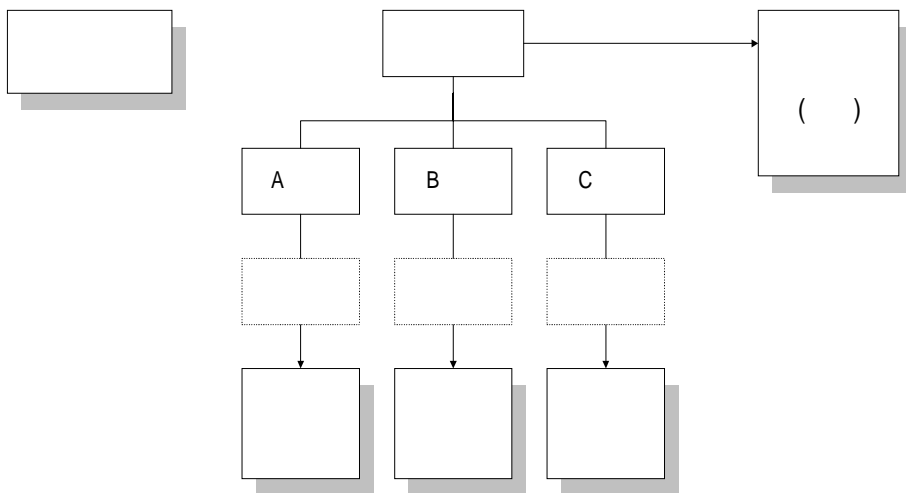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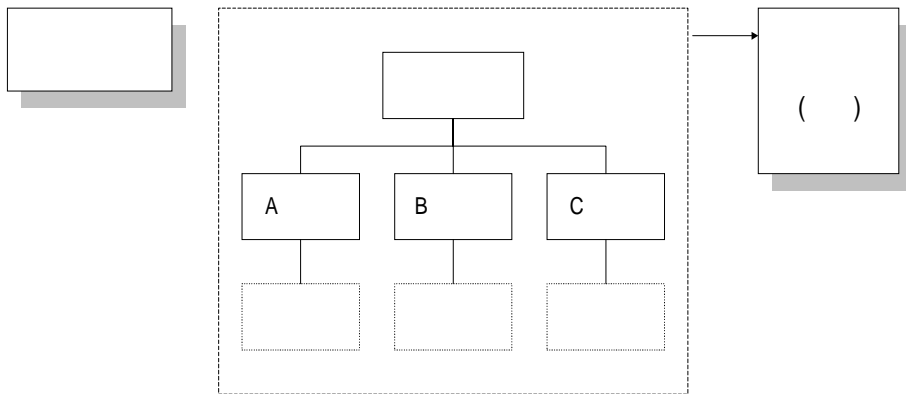
한 지주회사하에 분사화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여러 전략상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의 세제는 이러한 조직변경에 대해 높은 세부담을 지우므로 기업입장에서 분사화를 할 유인이 적어지게 된다.

연결납세제도의 사고방식은 하나의 기업집단 또는 연결그룹 전체로 세금부담능력을 파악하며, 그 기업집단 또는 연결그룹 외부로 판매된 시점에서 소득을 인식하고 과세한다. 따라서, 동일그룹 내부의 회사간에는 개개의 회사의 손실과 이익은 상쇄되고, 그룹내부의 자산의 이전이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는 과세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결그룹사이의 미실현이익은 제거되는 것이다.

요컨대, 기업이 조직형태를 선택함에 세제상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물론 연결납세의 범위를 결정하고 소득통산 및 내부거래손익의 제거 등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 국의 연결납세제도를 살펴보고 검토사항에서 다루도록 한다.

<그림 II-1> 사업부제와 자회사화의 납세



※ 자료 : 「入門 連結納稅制度」, 財經詳報社, 1999

2. 대규모기업집단제도와 지주회사제도

가. 대규모기업집단제도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근거

우리나라의 대규모기업집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1조에 의해서 지정된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대규모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 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단, 대규모기업집단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⁷⁾

7)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공적 법인⁸⁾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전체 자산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요 규제내용

가) 상호출자금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안된다.

단, 회사의 합병 실행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지만, 이 경우에도 6월 이내로 처분해야 한다.

8) 국가기간산업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을 말한다.

나) 계열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취득 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안된다.

다) 출자총액의 제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회사 및 지주회사)는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단,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2년에 한함),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6월 이내에 한함),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20년 이내), 기업구조조정 및 외국인의 유치 또는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5년 이내)에는 예외로 한다.

라) 채무보증의 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중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보험회사 제외)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해서는 안된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채무보증의 해소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신규지정 당시의 기존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

바)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회사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승인등을 얻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 내부거래의 이사회결 및 공시

대규모기업집단 중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대규모내부거래는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상의 30대 그룹에 대한 직접적 규제 및 부수적 규제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2> 30대 그룹에 대한 직접적 규제

규제사항	규제내용	공정거래법
상호출자금지	대규모기업지단 소속회사간 상호출자 금지	법 제9조 1항
계열창업투자회사의 주식취득 제한	계열 창업투자회사의 계열사 주식취득 금지	법 제9조 3항
출자총액의 제한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	법 제10조의1항
채무보증의 금지	계열사간의 채무보증의 금지	법 제10조의2 제1항
채무보증의 해소	기존 채무보증의 완전 해소	법 제10조의3 제1항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계열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금지	법 제11조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10%나 100억 이상 자금, 자산 등의 거래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내용을 공시	법 11조의2

※ 자료 : “30대 그룹 지정제도”, 전경련, 2000.7

<표 II-3> 30대 그룹에 대한 부수적 규제

규제사항	규제내용
30대 그룹 지정	매년 30대 그룹을 지정
지정관련 자료 제출	해당기업과 특수관계인은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
30대그룹 범위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이 광범위함
계열분리요건	30대그룹에서 제외되려면 요건을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
공인회계사 감사	매년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아야 함
지주회사 설립규제	지주회사 설립시 채무보증 완전 해소
계좌추적권의 대상	부당지원행위를 조사할 때 계좌추적권의 발동대상이 됨
주식소유 현황 및 변동내용	매년 4월말, 신규지정은 30일 이내, 사유발생 이후 30일 이내
출자총액 및 한도 신고	매년 4월말, 신규지정의 경우 30일 이내
채무보증 현황 신고	매년 5월말, 신규지정시 60일 이내
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 신고	매월 1회, 사유발생 이후 30일 이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확인	공정위는 금융감독원 등에 주식소유현황 자료 등의 확인을 요구함
내부거래 별도 관리	30대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시기준이 별도로 제정되어 운영됨

※ 자료 : “30대 그룹 지정제도”, 전경련, 2000.7

<표 II-4>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

순위	기업집단	계열사수	순위	기업집단	계열사수
1	현대	25	16	효성	15
2	삼성	63	17	대림	19
3	LG	42	18	S-오일 (S-오일(주))	지정제외 (2000.11.22)
4	SK	51	19	동부	19
5	한진	19	20	코오롱	22
6	롯데	31	21	동양	29
7	(주)대우	지정제외 (2000.7.19)	22	고합	6
8	금호	18	23	제일제당	27
9	한화	25	24	대우전자 대우전자(주)	4
10	쌍용	21	25	현대산업개발	9
11	한솔	20	26	아남	12
12	두산	17	27	새한	12
13	현대정유 (현대정유(주))	2	28	진로	16
14	동아 (동아건설산업(주))	지정제외 (2000.11.29)	29	신세계	11
15	동국제강	8	30	영풍	24
합계					567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01.1.2 기준

나.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

우리나라는 경쟁력상실 부문의 분리·매각, 주력부문에 대한 외자유치 등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핵심역량 집중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지주회사제도가 경제력집중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8조~제8조의3).

지주회사란 주식(지분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이며, 자회사는 지주회사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1)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제8조의2).

- ① 순자산액(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부채비율 100% 이내)
- ②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자회사의 지분비율 30%이상)

단, 벤처캐피탈 성격의 회사가 다양한 종류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로 하고 있다.

- ③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 ④ 금융지주회사가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⑥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단,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와 합병상 회사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설립하는 경우에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부채비율제한에 대하여 1년간, 자회사 지분비율제한에 대하여 2년간의 예외를 인정한다.

나) 채무보증제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30대기업집단)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 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 ②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
- ③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 ④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

<표 II-5>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제도

항목	목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100%이내 제한	금융기관 차입금 등 부채에 의한 과도한 계열 확장 방지
자회사 주식소유비율 30%이상 단, 벤처지주회사는 20%이상	소액자본에 의한 계열 확장 방지
자회사가 아닌 타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금지	계열회사의 지배관계를 형성, 강화, 유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주회사가 계열유지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
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손자회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방지하여 지나친 계열확장 차단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분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자회사·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의 사전 해소	계열사의 독립경영을 확보

※ 자료 : 김문희(2000)

한상범·김문현, “종합금융서비스의 시대 : 금융지주회사”, 한국증권연구원, 2001.1 재인용

2)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신고 및 자료제출요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

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한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위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로 하여금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3)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시에는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채무보증의 취소, 범위반사실의 공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기타 범위반사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나)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유주식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고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 위반시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 지주회사의 과세문제

지주회사와 관련된 과세문제는 크게 지주회사 설립 당시의 과세문제와 설립후의 과세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우선 지주회사제 즉,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현물출자 또는 공개매수에 의해 설립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 세규정을 살펴보고, 새로운 지주회사화의 방법으로 주식교환 및 삼각합병방식에서의 과세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주회사의 설립 이후 과세문제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연결납세가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은 집단과세제도로써, 이 장에서는 이 제도의 의의 및 주요국에서의 제도 현황을 비교 분석한다.

가.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된 과세문제

1) 현물출자

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요건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때,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며, 현물출자의 대상은 주식 또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 등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제52조 제1항)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위의 내용과 같다. 다만,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주식을 출자하여 지주회사(법인세법 제18조의 2)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방법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이 때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 익금산입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또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때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

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일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라면 압축기장총당금 \times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 중 양도한 주식수/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수)를 익금에 산입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한편,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i)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ii)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주식을 출자하여 설립된 지주회사(법인세법 제18조의 2)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위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승계받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현물출자 받은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ii)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등은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를 기준)을 승계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현물을 출자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신설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취득가액을 신설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설법인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특별부가세율은 미등기양도토지 등의 경우 과세표준의 30%, 그 이외의 경우에는 15%이다(법인세법 제101조).

다)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면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2) 공개매수

가)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

개인의 경우,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의 상장여부에 무관하게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다.

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으로서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 등이란 다음의 2가지 경우이다.

첫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둘째,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때의 시가총액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그 이외의 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준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다)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라) 세율

개인의 경우,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1년미만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20%, 3천만원~6천만원인 경우 30%, 6000만원이상인 경우 40%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10%, 그 이외의 경우에는 20%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04조).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부과세 과세표준에 15% 세율을 적용한다.

3) 주식교환 및 삼각합병

가) 기업간 주식교환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와 신설법인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가 199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들 특례는 기업간의 빅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간의 주식교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아니다. 지주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식교환은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조세상의 특례규정은 없다.

○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교환대상법인)의 주주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다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주식을 양수한 법인 또는 또 다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신설법인 또는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물적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함)의 주식의 전부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상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또는 물적 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한편, 일본은 '평성 11년도 세제개정'에서는 주식교환·주식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세특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주식교환·주식이전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의 주식을 모회사에 양도하였을 때, 그 양도익의 과세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과세이연을 인정한다(조세특별조치법 제37조의 13의 2).
- 주식이전 후에 자회사가 모회사에 대하여 그 100%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익에 대해 비과세한다(조세특별조치법 제67조의 9의 4).

나) 삼각합병방식(triangular merger method)

우리나라의 경우 삼각합병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과세상의 특례규정은 없다.

일본의 경우 삼각합병방식은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교환단계에서 주식을 시가매각했다고 간주하고, 취득액과의 차액(주식양도이익)에 개인 26%, 법인 50% 가까이 과세되어 높은 세부담을 발생시킨다. 또한, 주식거래시에는 “유가증권거래세”라고 하여 0.21%의 세부담이 발생한다. 더욱이 설립등기시 “등록면허세”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 도시은행의 경우 지주회사설립시의 세부담은 수천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설립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삼각합병방식에 의해서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이익과세, 유가증권거래세,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사업회사처럼 ‘자회사설립방식’(사업부문을 전부 현물출자나 영업양도로 신설하는 자회사로 옮겨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로 하는 방법)으로의 설립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일본 현행법에서는 출자한 자산에 토지 등의 고정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함된 고정자산의 20%가 과세대상이 된다.

은행지주회사창설특례법에 근거한 지주회사설립에 대해서 ‘평성 10년도 세제개정’에서는 삼각합병방식의 과세특례조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주식교환에 따라 양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취득가격을 인계하도록 하여 과세이연을 인정한다.
- 소멸은행의 이월결손금에 관해서는 합병평가익에 의해 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합병법인에 인계를 인정한다.

44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 은행지주회사에의 현물출자에 따르는 증자에 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반감한다(2년간의 조치, 세율 1000분의 3 적용).
-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할 때의 유가증권거래세는 비과세로 하고, 존속은행이 받는 부동산의 소유권의 이전등기, 저당권의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반감한다(2년간의 조치, 세율은 각각 1000분의 3, 1000분의 0.5 적용).

나. 지주회사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방지

개인 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Gross-up 제도를 통해 배당의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다.⁹⁾ 그러나,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식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방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즉,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제를 활성화하고 지주회사의 주 수익원이 배당인 것을 고려한 것이다.

1) 지주회사

지주회사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으로 다음의

9)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소득총수익금액에 Gross-up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며, 이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즉, 배당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금액은 구령한 배당소득총수익금액에 19%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전의 배당소득으로 수정한 후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후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동 금액을 차감한다.

법인을 말한다.

-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즉,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가 아닐 것.
-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즉, 비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가 아닐 것.

2) 이중과세 방지

지주회사는 일부를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해 익금불산입 즉,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다.

-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위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그러나, 다음의 금액은 익금불산입에서 배제한다.

-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 (100% 한도)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차입금}}{\text{당해지주회사의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자산총액}}$$

-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인 경우 (100% 한도)
- 사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text{배당금액} \times \text{익금불산입률}(60\% \text{ 또는 } 90\%)$$

$$\times \frac{\text{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 등의 가액}}{\text{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받은 주식 등의 가액}}$$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이 익금불산입배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때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Ⅲ. 외국의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1.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2.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3. 프랑스의 연결납세제도
4. 영국의 연결납세제도
5. 독일의 연결납세제도
6. 각국의 연결납세제도의 요약

Ⅲ. 외국의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1.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각국의 연결납세제도는 각기 특징이 있지만, 미국·프랑스의 소득통산형과 영국·독일의 손익대체형으로 나눌 수 있다.¹⁰⁾

가. 소득통산형

연결납세형이라고도 불리는 소득통산형은 연결그룹내의 각 회사의 소득을 통산한 후, 연결과세소득과 연결납세액을 계산하고, 각 회사의 부담분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미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이 방식의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통산형에는 다시 각 개별법인이 연결납세채무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회사는 단지 연결납세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대리인형: 미국)와 모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자회사는 개별의 납세의무를 배분받는 경우(통합형: 프랑스)가 있다.

나. 손익대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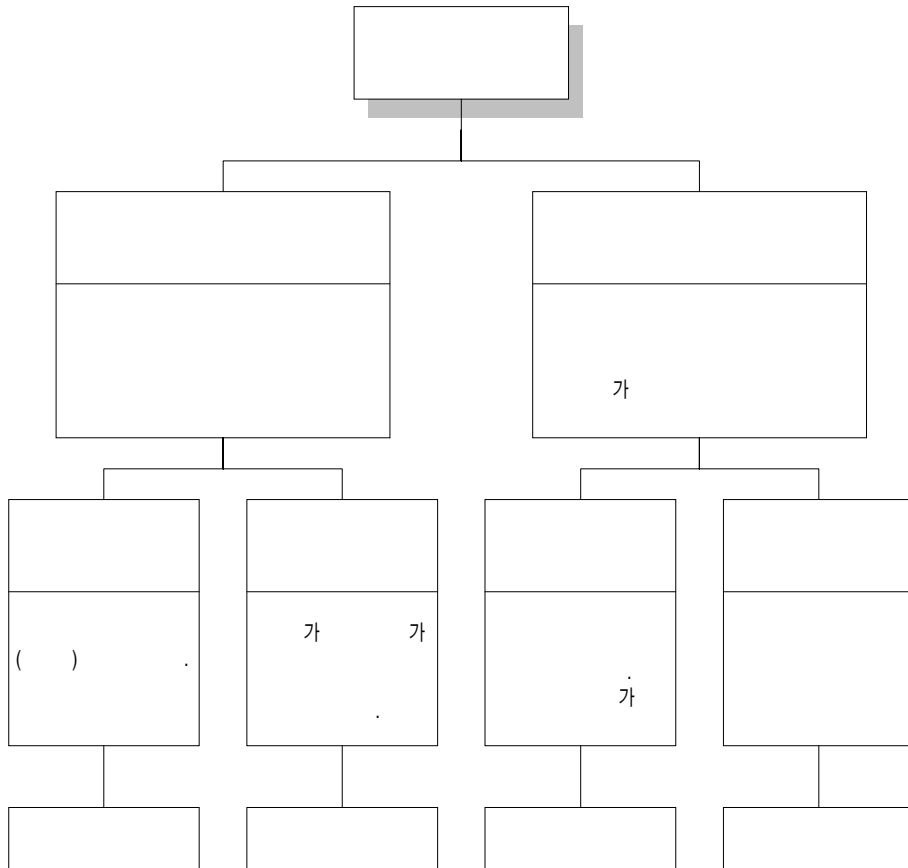
손익대체형은 내부이익 등을 조정을 한 후 연결그룹내의 개별회사간의 손익을 대체하고, 대체 후의 소득에 대하여 개별기업의 납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

10) G7국가 중 이탈리아, 캐나다는 기업집단세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이 방식의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손익대체형에는 다시 그룹내의 회사간 소득을 임의로 대체하는 경우 (임의대체형: 영국)와 모자회사간의 이익각출계약을 기초로 자회사의 소득을 모회사에 대체하는 경우(이익각출형: 독일)가 있다.

<그림 III-1> 주요국의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2.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가. 법인세제의 개요

미국 법인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 계산은 통상의 법인세의 계산과 대체최소세(Alternative Minimun Tax : AMT)¹¹⁾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대체최소세제도는 세제상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계산의 기본은 세제상의 우선항목을 가산하고 다음에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 자본이득 또는 손실은 경상적인 손익(ordinary income or loss)과 통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구분하여 파악한다.
- 이월결손금(net operating loss; NOL)의 이월 및 환입은, 1997.8.6 이후 개시연도 발생분에 대해서는 당기를 기준으로 과거 2년간 환입하고 향후 20년간 이월하며, 1997.8.6이전 발생분에 대해서는 당기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환입하고 향후 15년간 이월한다.
- 파트너쉽(partnership) 및 S Corporations¹²⁾ 제도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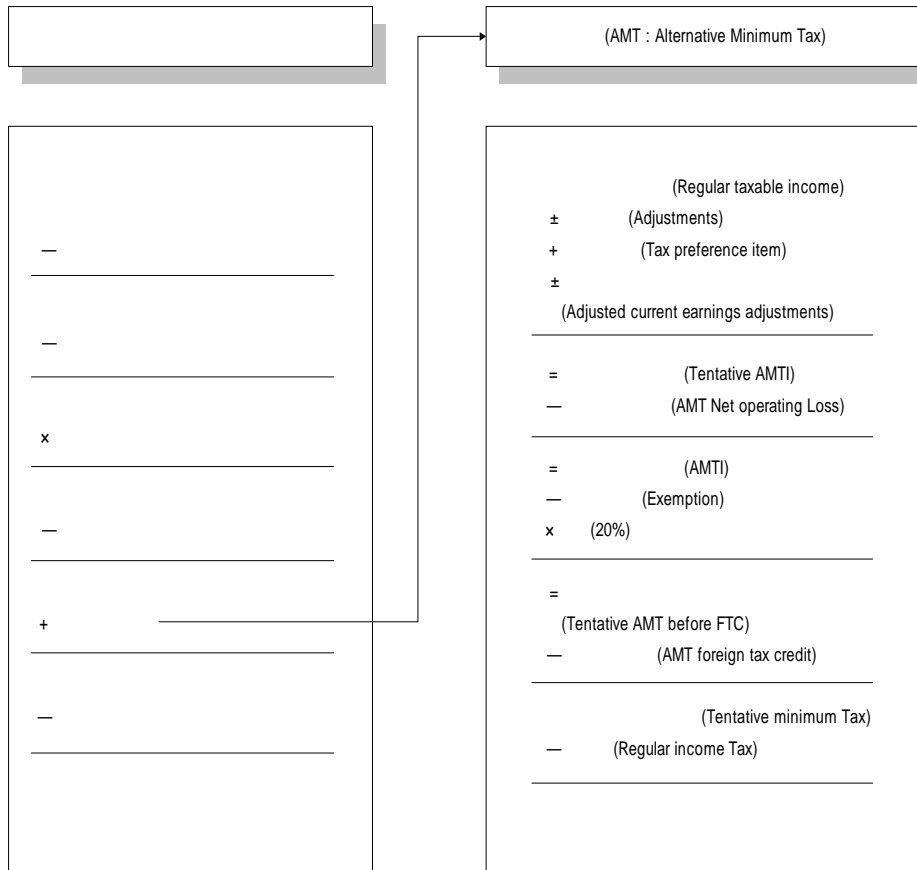
11) 회사에 대한 대체최소세율은 20%이고 \$40,000의 기초공제가 있다. 기초공제는 기초세액전의 대체최소세율과세소득액(AMTI)이 \$15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25%분만 감액한다.

12) S Corporations의 과세의 개요

내국법인인 IRC(Internal Revenue Code) sub chapter S의 규칙(rule)하에서 S Corporations로서 취급받는 선택을 함으로서 법인단계와 개인단계에서의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 S corporation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i) 내국법인일 것

<그림 III-2> 미국 법인세의 계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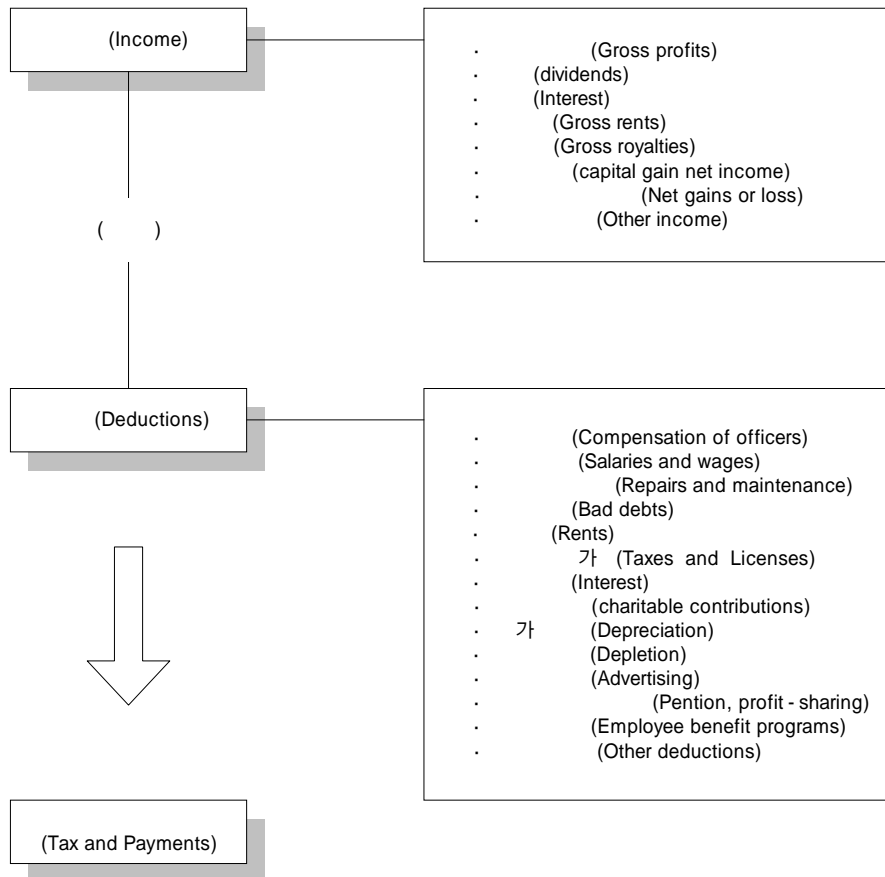


※ 자료 : 「入門 連結納稅制度」, 財經詳報社, 1999

- ii) 주식의 종류가 1종류일 것
 - iii) 주주가 75인이하 일 것
 - iv) 개인, 유산재단 및 일정한 신탁만이 주주일 것
 - v) 비거주 외국인주주가 없을 것
 - vi) 모든 주주가 S회사가 되는 것에 동의할 것
 - vii) S Corporations임을 나타내는 Form2553을 제출할 것
- 또한, 외국의 신탁은 원칙적으로 S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미국의 법인세신고서(Form 1120 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의 형식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III-3> 미국 법인세 신고서의 개요



※ 자료 : 「入門 連結納稅制度」, 財經詳報社, 1999

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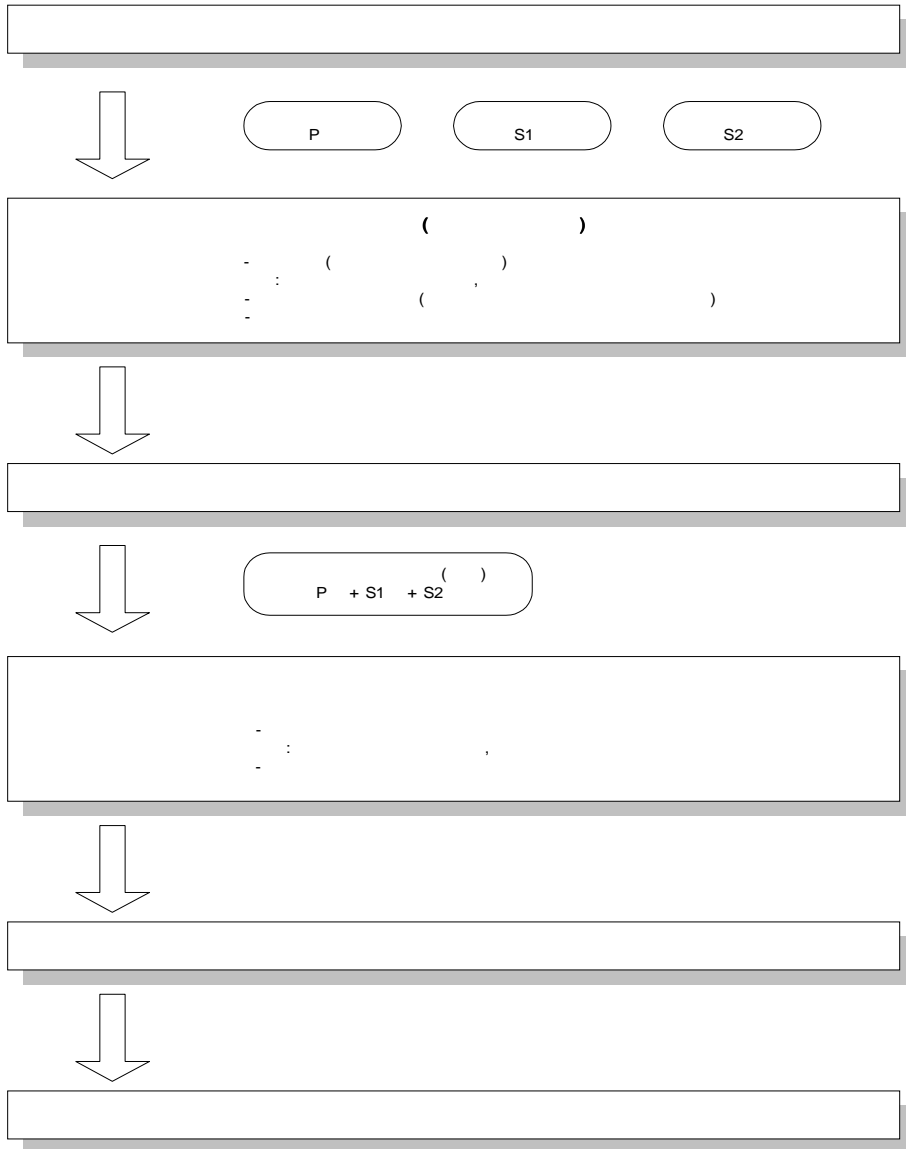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제1차세계대전시 초과이익세(누진세)가 도입되자 기업들이 회사분할에 의해 고세율을 회피해 나가자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되어 강제적으로 적용되었다(1917년). 그 후 초과이익세가 폐지(1921년)됨에 따라 연결납세는 선택적용으로 바뀌었으며, 1934년에는 철도회사를 제외하고는 연결납세제도가 폐지되었다. 1940년에 초과이익세가 부활함에 따라 연결납세제도가 재도입되었으며, 그 적용은 임의 선택사항으로 하였다. 또한, 연결납세의 대상범위의 보유비율은 1917년 100% 지분관계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1924년 95%, 1954년 80%로 다소 낮아졌다.

미국에 있어서 연결납세제도가 일찍 도입된 것은 미국의 회사법이 주단위로 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기업집단(그룹)을 주단위의 회사법의 규정(범위)을 넘어서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타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주회사법의 영향으로 그 주에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업집단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과세문제가 일찍 제기되었다.

다. 연결납세 절차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연결그룹내 각사의 소득 및 결손금을 합산하여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연결납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을 연결그룹 각사에 배분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연결납세소득 및 연결세액의 산출 과정은 <그림 III-4>와 같다.

<그림 III-4> 미국의 연결납세소득 및 연결세액 산출 과정



※ 자료 : 일본 재무성, 정부세제조사회, 1999.9

그림에서 보듯이 연결그룹내의 각 사의 소득의 합산과 그에 따른 연결법인세의 계산과정에는 두 번의 연결조정을 거친다. 연결그룹 각사의 단체소득을 합산하기 전에 단체베이스에서 연결조정이 이루어지며, 연결그룹 각 사의 단체소득을 합산한 후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연결조정이 이루어진다.

1) 연결조정 I

연결조정 I 은 연결그룹 각 사의 단체소득을 합산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연결조정으로, 개별신고에 맞추어져 있는 개별 기업의 소득을 연결납세에 적합하도록 수정하는 절차와 연결기준으로 재계산할 항목들의 일시 제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연결기준으로 재계산할 항목들은 개별기업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을 일시 제거한 후 연결조정II에서 연결기준으로 재계산한다.

개별기업소득의 주요 조정 항목은 연결그룹내 미실현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자회사 주식의 양도손실의 손금불산입, 기발생 미실현손실(built-in loss)의 공제 제한, 투자가액의 수정 등이다. 그리고, 일시 제거되는 주요 항목은 결손금, 수취배당금, 기부금 등이다.

2) 연결단체소득의 합산

연결조정 I 을 거친 후 연결그룹내 각 사의 소득을 합산한다. 이 단계에서 연결그룹내 개별기업의 소득과 결손의 통산이 이루어진다.

3) 연결조정 II

연결조정II는 연결그룹 각 사의 단체소득을 합산한 후 이루어지는 연결조정으로,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수정하는 절차이다. 이 단계의 내용은 연결조정 I에서 일시 제거된 항목들에 대한 연결기준의 재계산과, 연결기준의 이월결손금의 공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연결그룹내 기업간 수취배당금, 기부금공제, 지급우선배당 등에 대해서는 개별기업 기준이 아닌 연결기준을 적용한다.

자본자산의 양도이익 및 사업용자산의 양도이익을 차감한 자본자산의 양도순이익은 연결소득에 합산되며, 자본자산의 양도순손실은 연결결손금과는 별도로 소급 3년, 이월 5년간 연결순양도이익에서 공제한다. 사업용자산의 양도순손실은 통상 소득의 계산과정에서 공제된다.¹³⁾

연결그룹의 결손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이월결손금(net operating loss; NOL)의 이월 및 환입 규정을 적용한다.

라. 연결납세의 특징 및 개요

연결납세의 최대의 장점은 개별기업의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그룹의 사업이익과 사업손실 또는 자본이익과 자본손실 각각의 상쇄가 가능하고, 기업그룹의 내부이익을 상쇄할 수 있다. 또한, 연결납세그룹내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하고 양도손익을 이연할 수 있다.

반면, 연결납세제도를 일단 채택하면 IRS의 승낙없이 그만둘 수 없으며, 과세연도를 기업그룹에서 통일해야 하고, 연결납세에 관한 사업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연결이전의 결손금은 연결기업그룹에서 손익에 통산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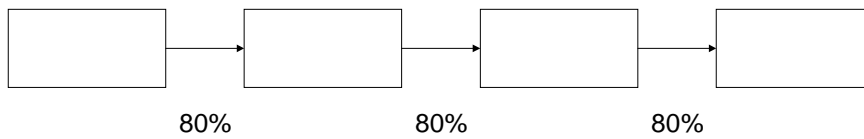
13) Reg. § 1.1502-22,23

1) 연결대상회사

도입당시는 연결대상을 100%자회사로 한정하고 그 적용도 강제로 하였으나, 현재는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에서 자회사, 손자회사 중 주식보유비율 80% 이상의 회사가 연결납세의 대상이 된다.

가) 지분의 직간접 소유

모회사는 또는 연결그룹 각각은 80% voting and value test를 만족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연결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다.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위 그림에서 모회사는 손자회사를 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64%(80% ×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손자회사를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51.2%(80% × 80% × 80%)를 보유하고 있다.

나) 80% voting and value test

모회사는 적어도 그 회사의 주식 총의결권의 80%를 소유하고, 총주식가치의 80%에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이 때의 주식에는 무의결권주, 배당이 제한되어 있거나 우선하는 주식 등은 제외된다.

다) 외국법인 등

원칙적으로 모회사·자회사에서 제외된다.

라) 가입 및 선택

연결납세는 납세자의 선택제로 되어 있다. 즉, 연결그룹은 그 그룹을 구성하는 전법인의 동의에 의해 개별납세신고 대신에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연결납세를 선택하면 그 연결대상이 되는 자회사 등을 전부 연결납세의 그룹에 포함하여 계산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자회사의 임의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자회사를 매각하여 연결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는 원칙적으로 5년간은 연결그룹의 재가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연결납세제도를 일단 선택하면 계속하여 연결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의 선택을 정정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내국세입청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납세의무자

최종적인 납세의무자는 각 개별기업이다. 자회사가 모회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는 서류(Form 1122)를 과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모회사가 연결그룹 각사의 대리인이 되어 신고 및 납세를 행한다.

연결신고서의 제출, 세액의 납부 등은 모회사가 행하지만 모회사는 자회사의 신고세액에 관한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연결세액에 대한 조세채무는 각 개별회사가 부담한다.

3) 사업연도 · 회계기준

그룹 각사의 사업연도는 통일해야 한다. 회계기준은 그룹 각사의 사업의 종류 · 내용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통일할 필요는 없다.

4) 연결그룹 내부거래의 미실현이익의 이연

연결납세소득은 연결대상의 개별신고소득을 우선 계산하고, 그것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연결그룹회사간에 이루어지는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의 양도에 관련된 손익은 상쇄되어 그룹 이외의 제3자에 양도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내부거래에 대한 공제방식은 판매자측에서 이익을 이연하고 매입자의 구입가격에는 영향받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모회사가 내부이익이 있는 자산을 자회사에 내부거래로 매각한 후 당해 자회사주식을 세무상의 장부가액으로 매각하는 것에 의한 조세 회피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연결납세법인그룹내의 법인간의 내부거래에 있어서 손금 또는 익금의 계산상의 시기가 상이한 경우(한 쪽이 발생주의, 다른 한 쪽이 현금주의일 경우)에는 시기상 느린 쪽에 맞춘다.

5) 이월결손금의 공제

그룹내의 각사의 연결결손금은 일정한 조건하에 연결이익과 상쇄된다. 연결기준의 결손금은 당기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결손금을 환입하고 향후 15년간 이월한다.

그러나, 그 법인의 연결그룹 가입 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가) SRLY(Separate Return Limitation Year) rule

자회사의 연결그룹 가입 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 연결납세신고 시 이월공제의 대상금액은 그 자회사의 연결신고연도의 누적과세소득으로 제한된다.

나) 주주지분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의 이월결손금 공제의 제한조치

결손금의 주주지분에 현저한 변동(3년 동안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이 50% 증가)이 발생한 경우에 그 이월결손금에 관련된 각 연도의 공제제한액은 그 자회사의 연결신고연도의 누적과세소득으로 제한된다.

6) 자산의 미실현손실

자회사가 연결그룹 가입시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미실현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 후에 그 손실이 실현되었을 때 위의 5)에서와 같은 제한조치가 적용된다.

7) 자회사주식의 양도손실의 부인(LDR : loss disallowance rule)

연결그룹내의 법인이 양도한 연결자회사주식에 관련된 양도손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LDR : loss disallowance rule). 이것은 투자수정에 의해서 증액된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이 양도 원가가 됨으로 인해 연결납세소득에 포함된 자회사의 이익이 상쇄되어 버리는 것을 막는 취지이다.

8) 연결납세채무의 배분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배부방법을 재무성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 개별소득비례방식
- 개별세액비례방식
- 증가세액배분방식
- 기타(국세청장의 승인) : 절세효과배분방식 등

가) 연결 그룹회사의 개별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
(개별소득비례방식)

이 방법은 연결그룹 각사의 개별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결손이 있는 회사는 과세소득을 0으로 취급한다.

구분	A사	B사	C사	연결세액(30%)
소득	500	1,000	(300)	360
배분기준이 되는 소득	500	1,000	0	
연결세액 배분비	1/3	2/3	0/4	
배부세액	120	240	0	360

나) 연결그룹회사가 개별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의 세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 (개별세액비례방식)

이 방법은 연결그룹 각 사가 개별신고한 세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도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세액은 0으로 취급한다.

구분	A사	B사	C사	연결세액 (30%)
소득	500	1,000	(300)	360
배분기준이 되는 개별신고세액	90	270	-	-
연결세액배분비	1/4	3/4	0/4	-
배부세액	75	225	0	300

다) 연결신고에 의해 세액이 증가하는 연결그룹회사의 세액을 세액이 감소하는 그룹회사에 배부하는 방법 (증가세액배분방식)

이 방법은 개별신고시의 세액보다 연결납세시에 더 부담하게 되는 회사의 세액을, 개별신고시의 세액보다 연결납세시에 세부담이 감소하는 회사에 배부하는 것이다. 이를 절차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연결그룹회사의 개별과세소득에 의해 연결세액을 배분한다.
(개별소득비례방식)
- ② 연결그룹회사의 개별신고시의 개별세액을 계산한다.
- ③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②의 금액이 ①의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에 배분. 이 때 배분되는 금액은 ②의 금액이 ①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64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구분	A사	B사	C사
① 개별소득비례방식에 의한 연결세액 배분액	120	240	0
② 개별신고시의 세액	90	270	0
① 이 ②를 초과하는 세액	30		
② 가 ①을 초과하는 세액		30	
재배부액		30	
연결세액	90	270	

라) 결손법인의 결손금의 절세효과를 결손법인에 배분하는 방법
(절세효과배분방식)

이 방법은 결손법인의 결손금의 절세효과를 개별신고시의 세부담이 연결납세로 인해 감소한 기업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이를 절차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연결그룹회사의 개별과세소득에 의해 연결세액을 배분한다.(1방법)
- ② 연결그룹회사의 개별신고시의 개별세액을 계산한다.
- ③ ②의 금액이 ①의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에 결손기업의 결손으로 인한 절세효과를 배분한다. 단 이 경우의 배부액은 그 초과액을 상한으로 한다.

구분	A사	B사	C사
① 개별소득비례방식에 의한 연결세액 배분액	120	240	0
② 개별신고시의 세액	90	270	0
②가 ①을 초과하는 세액		30	
결손법인의 절세효과 배분		90	(90)
연결세액	120	330	(90)

표에서 C사에의 연결세액의 배부액은 -90인데 이는 C사가 연결그룹의 타사에서 결손금의 절세효과분의 90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연결그룹으로서의 연결세액 360을 세무당국에 납부하지만 A사와 B사는 450의 세액을 부담하고 차액 90은 C사에 지불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연결그룹 각 사의 연결과세소득 및 연결세액에 대한 공헌도(또는 절세효과)에 따라 연결세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합리적이란 마치 개별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였을 세액을 기본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결손회사의 결손금이 연결그룹의 타사의 이익과 상쇄된 절세효과를 상쇄된 연도에서 인식하여 그 때 절세효과를 결손법인에 귀속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과는 별도로 결손금을 연결그룹의 타사의 이익을 상쇄한 연도에서 그 때 절세효과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결손법인이 소득을 낸 연도에서 이 절세효과분의 금액을 인식(요컨대, 결손법인에 음의 금액을 배부)하는 방법도 재무성규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9) 연결납세신고서의 양식

연결납세신고서에 쓰이는 양식은 모회사가 개별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과 동일한 양식(미국법인소득납세신고서 : Form 1120)을 사용한다. 어떠한 형식으로 계산서류를 작성·첨부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Form 1120의 가이드라인 이외에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다.

연결납세에 사용되는 신고서의 양식은 다음 2가지가 있다.

— Form 851

- 연결 대상법인의 일람표
- 이 양식은 매년 제출해야 함.

— Form 1122

- 연결납세신고서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자회사의 허락 및 동의서
- 이 양식은 처음으로 연결그룹의 연결납세신고에 참가하는 자회사가 제출함.

관련 그룹 각사가 개별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해야만 하는 정보는 모두 연결납세신고서에 포함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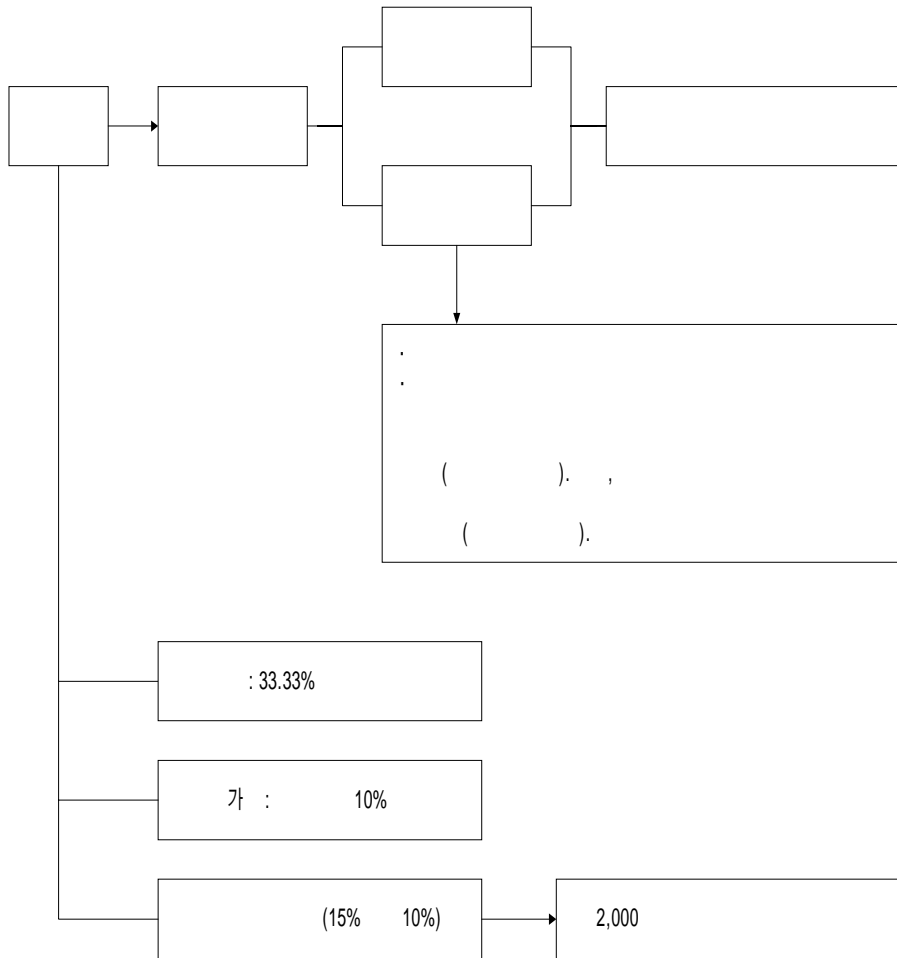
3. 프랑스의 연결납세제도

가. 법인세제의 개요

프랑스 법인세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유보이익과 배당이익도 동일하게 과세된다.
- 프랑스 거주법인이 지급한 배당을 받은 주주(법인 및 개인)는 배당지급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액 중 그 지주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다.

<그림 III-5> 프랑스 법인세의 개요



※ 자료 : 「入門 連結納稅制度」, 財經詳報社, 1999

- 과세소득은 재무제표에 공시한 당기이익을 기초로 한다.
-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이 자회사의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된다.
- 결손금의 최저법인세(총매출액에 의해 결정됨)의 납부액은 향후 2년간에 걸쳐 법인세와 상쇄할 수 있다.
- 결손금은 당기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환입(세액공제의 세액은 5년)하고 향후 5년간 이월(감가상각부분은 무제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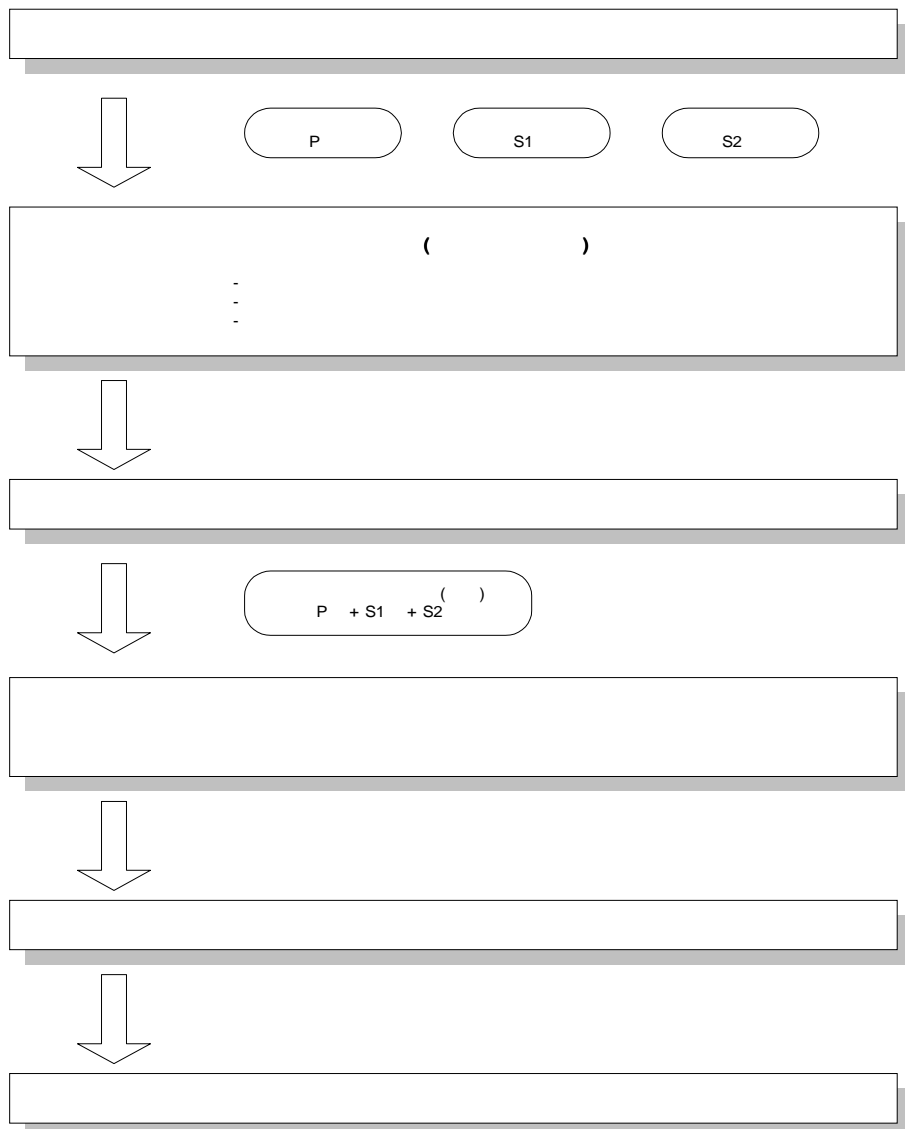
나. 연결납세절차

1988년에 도입된 프랑스의 연결납세제도는 95%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자회사손익을 모회사손익에 연결하는 제도이다. 프랑스 법인세는 외국사업소로부터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제도(국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정으로 다음 두 개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해외지점 이외의 직접경영에 관한 항구적 시설의 손익을 본점손익에 연결하여 프랑스법인세를 적용하는 제도
- 해외지점 이외의 직접경영에 관한 항구적 시설과 50%자본소유의 해외자회사의 손익을 본점손익에 연결하는 제도

프랑스의 연결납세소득 및 연결세액의 산출 개요는 <그림 III-6>과 같다. 대체적인 절차과정은 미국의 연결납세 절차와 유사하다.

<그림 III-6> 프랑스의 연결납세소득 및 연결세액 산출 과정



※ 자료 : 일본 재무성, 정부세제조사회, 1999.9

연결조정은 연결그룹내 기업의 소득을 합산하기 전과 후에 두 번 이루어진다. 전자는 개별신고상의 소득을 연결납세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이며, 후자는 연결기준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과정이다. 항목에 대해서는 미국의 연결납세 절차와 차이가 있지만, 이는 국가간의 세제상 정책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는 차이가 없다 하겠다.

1) 연결조정 I

- 연결그룹간의 대손충당금 : 연결소득에 익금산입한다.
- 모회사로부터의 출장임원의 보수 : 연결소득에 익금산입한다.
- 연결그룹의 채무면제 등 : 연결소득의 손익에서 제외한다.
- 연결자본이득 및 연결자본손실 : 단기자본이득 및 단기자본손실은 조정처리하지 않으며, 장기자본이득 및 단기자본손실은 합산하여 상쇄시킨다. 여기에서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소유기간 2년이상을 장기라 하고, 2년미만을 단기로 한다.
- 연결그룹간의 고정자산의 이전 : 연결그룹내에서의 고정자산 이전 시 그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했을 때의 양도이익에 상당하는 부분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미국과 동일하게 연결소득의 양도소득의 계산에 가산된다. 반면, 저가매입의 경우에 감가상각비감소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 자회사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이자 : 자회사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이자의 취득 후 15년간 손금불산입한다. 이 규정은 모회사의 지급이자와 회사의 소득을 상쇄하여 소득의 감소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손금불산입액은 다음과 같다.

$$\text{그룹의 지급이자합계액} \times \frac{\text{출자의 취득가액} - \text{취득회사의 불입자본금}}{\text{연결그룹의 평균채무총액}}$$

2) 연결조정 II

연결조정 II는 연결결손금의 공제에 대한 것이다. 결손금은 당기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환입, 향후 5년간 이월한다. 단, 장기자본손실은 향후 10년 동안의 순자본이득과 상쇄하거나 장기순자본이득특별준비금 잔액과 상쇄할 수 있다.

또한, 조세회피방지의 관점에서 연결그룹 가입 전의 이월결손금은 개별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하고, 연결과세소득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다. 연결납세개요

1) 연결대상회사

연결납세의 대상은 프랑스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으로, 모회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95%이상의 의결권 및 배당권이 있는 주식의 소유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자회사이다. 연결납세의 선택자체는 임의선택이다. 연결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동의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5년을 기한으로 하여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갱신도 인정된다. 미국과 다른 점은 프랑스는 연결대상으로 하는 자회사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모회사·자회사에서 제외된다.

2) 납세의무자

연결납세액의 납세의무자는 모회사이다. 연결그룹의 각 법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개별신고서를 제출하며, 연결세액이 미납된 경우에 연결그룹 내의 자회사는 개별신고를 할 경우에 계산되는 당해 법인에 관련된 세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3) 사업연도 · 회계기준

연결 각사의 사업연도는 통일해야 한다. 회계기준은 그룹 각사의 개별회계처리가 가능하다.

4) 연결납세채무의 배분

각자회사는 개별적으로 과세되는 경우의 세액을 모회사에 지급하고, 그 절세효과는 모회사에 유보하거나 적자회사에 배분한다.

이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율 50% 가정)

구분	모회사	A사	B사	C사	연결과세소득	연결세액
과세소득(손실)	200	△50	50	100	300	150

가) 모회사에 절세효과를 유보하는 경우

구분	모회사	A사	B사	C사
조세채무	연결세액 150	0	25*	50**

* $50 \times 50\% = 25$

** $100 \times 50\% = 50$

나) 적자회사에 절세효과를 배분하는 경우

구분	모회사	A사	B사	C사
조세채무	연결세액 150	△25환급	25	50

5) 그룹에서의 탈퇴

연결대상인 자회사가 95%이상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게 되거나 사업연도의 변경에 의해 모회사와 동일하지 않게 될 경우, 또는 연결자회사의 선택을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그룹에서 탈퇴하게 된다.

연결대상인 자회사가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의해 과세이연된 내부미실현이익은 실현된 것으로 하여 그 양도 손익을 인식한다. 또한, 탈퇴하기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그룹내의 채무 면제 등으로 손익이 제외되어 있던 것은 개별기업의 과세 관련 사항이 된다.

연결자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연결그룹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그 탈퇴한 회사의 감가상각부인의 이월액을 이용할 권리를 잃게 된다. 또한, 탈퇴연도에서 그 탈퇴자회사의 탈퇴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모회사에서 공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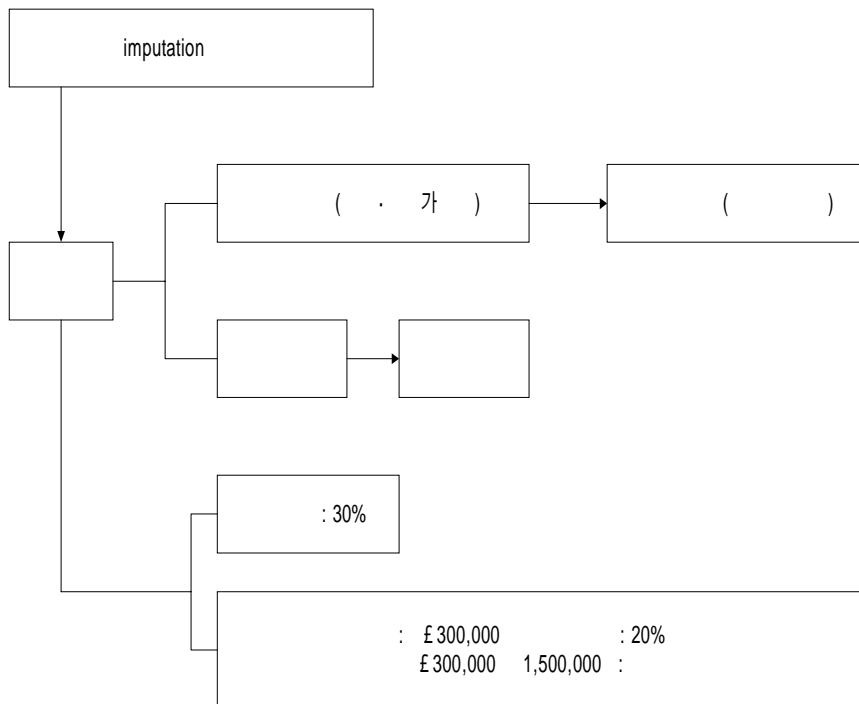
4. 영국의 연결납세제도

가. 법인세제의 개요

영국 법인세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4/1~3/31의 회계연도기간에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회사의 회계연도가 세법상의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통상 선불법인세(ACT)는 1999년 4월 6일로 폐지되었다.

<그림 III-7> 영국 법인세의 개요



※ 자료 : 「入門 連結納稅制度」, 財經詳報社, 1999

- 상이한 종류의 소득을 구분하고 각각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¹⁴⁾
- 영업손실은 다른 소득이나 자본이득과 상쇄할 수 있으며, 향후 제한 없이 이월가능하다.

나. 기업집단세제

영국의 연결납세제도인 그룹릴리프제도는 적용을 받는 그룹회사 상호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회사로부터 이익이 있는 회사에게 손익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의 법인세는 1966년 당시의 노동당정부에 의해 법인의제과세(법인세를 개인주주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로 하는 방식)에서 법인독립과세방식(법인세를 회사 독자부담으로 하고 주주에도 배당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67년 도입된 그룹릴리프제도는 그 법인소득과세의 강화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소득계산제도의 합리화를 의도한 것이다. 또한, imputation제도(주주의 배당과세에 있어서 법인세 상당액공제방식을 채용)가 도입된 후에도 그룹릴리프제도는 존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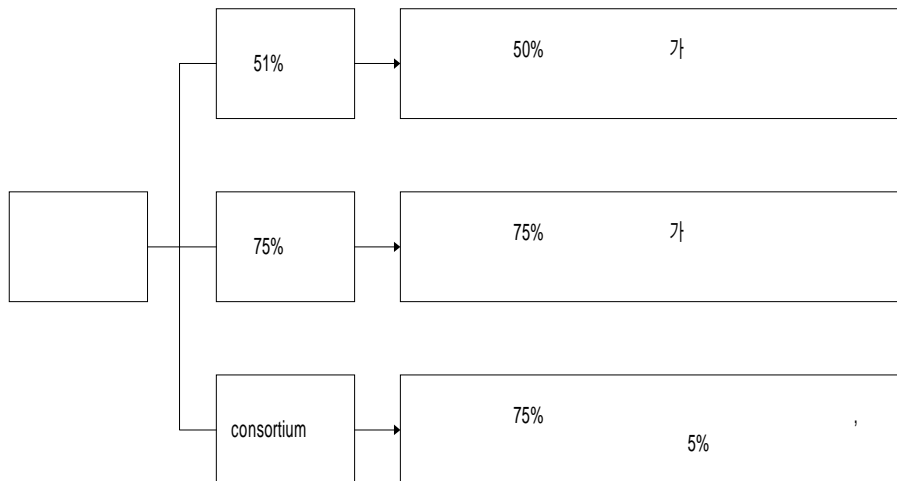
이 제도의 장점은 제도의 적용이 강제되지 않고 기업의 선택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반면, 손익대체에 의한 세액의 결정에 있어서 세무당국과 기업의 합의의 기간이 결산기간 후 2년간으로 결정되는 것은 단점이랄 수 있다. 영국에 있어서는 세액의 결정이 결산기 후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이 자주 있어서 그룹릴리프제도의 결산 후 2년이라고 하

14) 영업소득(Schedule D 제1항), 재산소득(Schedule A), 비사업차입금에 관련된 초과비용(Schedule D 제3항), 해외자산에서의 수입(Schedule D 제5항), 기타의 수입(Schedule D 제6항)에 과세자본이득을 더한 후 손금을 차감하여 법인세과세소득을 계산한다.

는 기한은 영국의 기업으로서는 너무 짧은 경향이 있다.

영국의 기업집단세제는 크게 나누어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대상법인은 영국의 내국법인으로 한정되며, 주식의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곱셈방식으로 계산한다.

<그림 III-8> 영국 기업집단세제의 분류



1) 51%그룹

51%그룹에 있어서는 모회사의 선불법인세(ACT : Advance Crporation Tax)를 자회사그룹에서 과세소득의 25%를 한도로 세금공제할 수 있다. 또한, 그룹내의 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납부가 면제되며 그룹내의 지급이자도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선불법인세는 1996년 4월 6일로 폐지되었다.

2) 75%그룹

영국의 내국법인 중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의 75%이상을 보유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이들 법인(소위 모·자회사), 또한 두 법인의 주식이 동일한 모회사에 의해 75%이상 보유되고 있는 경우의 이들 법인(소위 모회사와 형제회사)이 75%그룹의 구성회사가 된다.

75%그룹에 있어서는 그룹회사간에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도록 한다. 또한, 그룹릴리프를 적용할 수 있고, 기업그룹의 다른 회사로부터 결손금 등의 대체를 받아 그 자회사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사에 있어서의 양도익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3) 공동회사(consortium company)

공동회사의 주식의 소유법인은 신청회사 또는 대체회사이고, 다음 법인을 상대로 하여 개개의 회사의 지분비율에 대응하여 사업손실 등의 대체를 행할 수 있다. 이를 컨소시엄 릴리프(consirtium relief)라 한다.

- 컨소시엄·그룹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공동회사
- 컨소시엄·그룹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지주회사인 공동회사의 90%자회사
- 컨소시엄·그룹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지주회사인 공동회사

다. 그룹릴리프(Group Relief) 제도의 개요

1) 대상회사

그룹릴리프제도에서는 그룹내의 이익회사(climant company : 신청회사)는 당해 그룹내의 다른 결손회사(surrendering company : 대체회사)로부터 동일기간에 발생한 결손회사의 결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대체를 받아 자기의 총이익과 상쇄할 수 있다. 그 대상이 되는 법인은 75%그룹과 공동회사이다. 연결납세는 임의선택이며, 계속적용의 의무도 부과되어 있지 않다.

대체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소득에 대해서 발생한 결손(trading losses)
단, 자본이득·손실은 그룹릴리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세무상의 감가상각비(capital allowances)의 사용이 제한된 금액
- 투자회사의 관리비 중 당기총익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
- 특정의 지급이자, 특허료 등(소득공제항목)이 당기이익을 초과할 때는 신청회사가 대체한다.

2) 납세의무자

그룹릴리프는 그룹전체로 연결납세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손금 등의 대체 후에 각 법인이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3) 사업연도·회계기준

영국의 연결납세제도에는 사업연도를 통일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회계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없다.

4) 자금의 이동

그룹릴리프 제도에 의한 손익의 대체에는 자금이동이 강제되어 있지 않지만 절세액에 해당하는 자금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에는 확정 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그룹릴리프제도라 하는 세무상의 취급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소수주주보호의 관점에서 결손회사에 소수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법상 손익대체에 따라 현금이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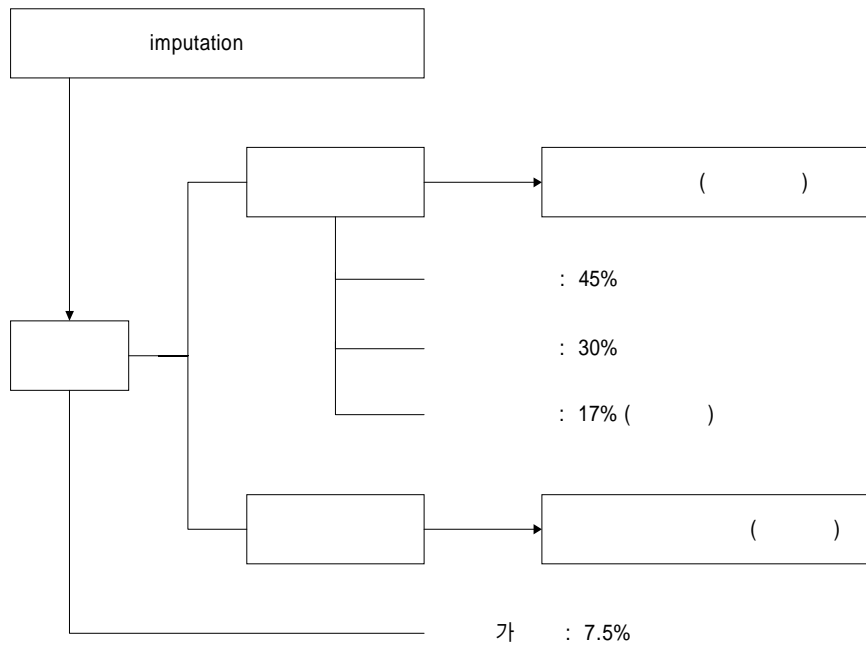
5. 독일의 연결납세제도

가. 법인세제의 개요

법인세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법인과세소득은 상법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계산된다.
- 접대비의 처리가 합리적이고 독립과목으로서 회계처리되고 있는 경우에 교제비의 80%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다.
- 기부금은 총과세소득 5% 또는 매출액과 급여와의 합계의 0.2%까지 손금불산입된다.
- 결손금은 당기를 기준으로 과거 2년간 환입(DM 10,000,000한도) 되고 향후 무제한으로 이월된다.

<그림 III-9> 독일 법인세의 개요



※ 자료 : 「入門 連結納稅制度」, 財經詳報社, 1999

나. 기관제도와 손익각출계약

독일의 연결납세제도인 기관제도는 지배기업이 완전히 다른 기업을 지배하고, 지배되는 기업(피지배기업)이 어떠한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지배기업의 손익을 지배기업의 손익으로 대체하고 손익통산을 한 납세액을 산출·납부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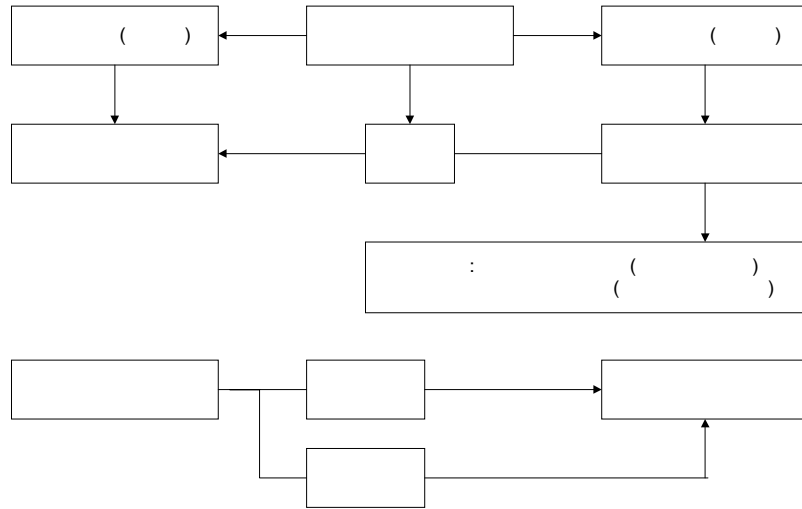
기관제도는 매출액의 누적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1969년부터 법인세에도 적용되었다. 20세기초 특히 1920년대에 대기업은 조직의 유연성, 시장기회에의 적응 등의 경제적 이유에서 경영권은 모회사가 장악한 채로 자회사의 분할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실제의 산업현장의 변화에서 기관제도의 개념이 생겨났다. 기관제도의 주요목적은 이중과세의 회피나 법률상 독립한 기업체간의 손익의 이전에 있다.

1977년의 법인세법 개정에 의해 배당이중과세방식이 법인세상당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법인세상당액공제방식에 의해서 이중과세가 회피되었기 때문에 기관제도의 현재의 주요한 목적은 이중과세회피라기 보다는 회사간 손익의 이전이며, 이로 인한 세금의 공평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손익각출계약이란 자회사인 주식회사 등이 그 총이익을 모회사에 각출하는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모회사는 자회사에 발생하는 전체의 결손 중 그 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가지고 보전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지는 계약으로, 계약체결은 쌍방 회사의 주주총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계약은 최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5년 경과 후에 연장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일단 중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5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해야 한다. 또한, 이익각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은 모기업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림 III-10> 독일의 연결납세제도(기관제도)



※ 자료 : 「入門 連結納稅制度」, 財經詳報社, 1999

다.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1) 연결대상회사

기관제도에 있어서의 지배기업은 무한납세의무자로서의 자연인 또는 내국법인·사단·재단·합병회사 및 합자회사의 인적회사이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기업의 독일 국내지점도 포함된다. 연결대상이 되는 피지배기업은 등기지 및 관리지가 독일 내에 있는 주식회사, 혹은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등의 법인으로 제한된다.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기본적 일체성 : 지배기업이 사업연도의 초기부터 피지배기업의 의결권의 50%를 초과하는 지주비율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할 것
- 경제적 일체성 : 피지배기업이 지배기업의 경영조직에 포함되어 그 경영활동에 의해 지배기업의 경영목적에 종사할 것
- 조직적 일체성 : 지배기업의 경영의도가 피지배기업의 인사 등의 조직 내에 반영되어 있을 것

2) 납세의무자

기관제도는 기관에 속하는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고, 회사법상의 손익각출계약을 자회사와 맺는 것을 조건으로 피지배기업의 손익을 지배기업에 대체하여 그 합계액을 지배기업의 소득으로 하는 것으로, 지배기업이 기관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3) 사업연도·회계기준

회계연도를 통일할 필요는 없다. 또한, 회계기준도 통일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4) 내부이익

그룹기업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실현내부이익의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양도이익은 과세조정이 행해지지 않는다.

5) 이월결손금

계약체결 전의 피지배기업의 결손금 이월액은 지배기업의 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 또한, 손익의 대체에 관련된 자금은 이전하지 않고 대체에 관련된 채권·채무만이 기록된다.

6. 각국의 연결납세제도의 요약

앞서 살펴본 각국의 연결납세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주요국의 연결납세제도 비교

구분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유형	연결납세형		손익대체형		
			그룹·릴리프 제도	기관제도	
제도적용의 선택	임의선택				
연결대상	모회사	내국법인	내국법인 및 외국 법인의 내국지점	내국법인	내국법인 및 거주자 기업
	자회사	80%이상소유 내국 자회사	95%이상소유 내국 자회사	75%이상소유 내국 자회사	50%초과소유 내국 자회사
대상자회사의 선택 (가입)여부	모든자회사의 가입필요	임의선택 (5년간계속 要)	임의선택	임의선택 (이익각출계약필요)	
연결제외 회사	외국법인, 생명보험회사, 파트너쉽, 비과세단체등	외국법인	외국법인 등	외국법인 등	

III. 외국의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85

구분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계속적용 여부	연결요점은 IRS(내국세입청)의 승인필요	규제없음		5년이상 계속 이익각출계약 조건
회계연도 통일	필요		불필요	
회계기준 통일	불필요			
납세의무	개별회사 (모회사는 대리인)	모회사 (자회사는 연대책임)	개별회사	
연결납세서류의 작성 등	개별회사작성. 위반시 각사의 연대책임	N.A.	N.A.	신고는 모회사, 자회사도 필요. 납세는 모회사
결손의 환입·이월	환입 : 2년 이월 : 20년	환입 : 3년 이월 : 5년	환입 : 1년 이월 : 무제한	환입 : 1년 이월 : 무제한
개별회사의 가입시 자회사의 이월결손금	개별신고연도의 결손은 개별소득으로부터 공제		이월결손금의 대체는 불가	개별신고연도의 결손은 모회사의 출자로서 처리
내부거래 (연결그룹내 기업간 거래)	고정자산, 재고자산이라든가 미실현손익이연	고정자산 양도손익은 연결소거 재고자산은 개별상도 부가(簿價)양도가 가능	원가양도	특별규정 없음
외국세액 공제	한도액·공제액을 연결베이스로 계산	자회사의 공제가능세액을 모회사로 적용	규정없음	자회사로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이미 모회사에 적용
납세자의 입증책임	납세자	내용과 상황에 의함	납세자	N.A.
법인세율	15~35% (부가세 있음)	33 1/3% (부가세 있음)	10~30%	30% 등 (부가세 있음)

※ 자료 : 「月刊 資本市場」, 1999. 10. 수정

IV. 연결납세제도 관련 주요 과제

1. 연결납세제도 유형의 선택
2. 연결납세 적용범위
3.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의 이연
4. 이월결손금
5. 투자수정
6. 기타 과제

IV. 연결납세제도 관련 주요 과제

1. 연결납세제도 유형의 선택

앞서 살펴본 연결납세 유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소득통산형으로 자회사의 개별과세손익을 모회사의 과세손익에 합산하여 연결과세소득과 연결세액을 계산하고, 그 연결세액을 개별회사에 분배하는 형태이다. 연결그룹내에서의 손익의 통산, 연결그룹 기업간 자산의 양도익의 과세이연 등이 장점이며, 외국 세액공제 등의 공제한도액을 연결기준(base)으로 결정하며, 연결그룹내에서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영국의 그룹 릴리프(group relief)제도에서는 집단에 속하는 개별회사의 손실을 다른 개별회사에 대체하고 각 개별회사가 각각 자신의 대체 후의 과세소득과 세액을 계산하는 형태이다. 이 제도하에서 연결납세를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한도액이내에서 자유로운 대체가 이루어지며, 계속적 적용요건은 없다.

독일의 기관제도에서는 집단내의 특정한 자회사의 당기손익의 전액을 모회사에 이전하여 자회사손익을 원칙적으로 '영(zero)'으로 만드는 형태이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손익통산이 이루어지지만, 내부이익 배제 등의 계산이 불필요하며, 자회사는 5년 이상 계속을 조건으로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년도, 회계기준의 통일이 필요없다.

연결납세제도는 크게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양자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중 어느 유형의 연결납세제를 선택할 것인가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취지와 도입의 용이성, 과세체계, 도입에 따른 조세회피 등의 부작용 방지 가능성 등을 고

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조직형태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과 실질 담세력에 기초한 과세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손익대체형보다는 소득통산형이 보다 이리한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제도로 생각된다. 즉, 소득의 통산, 내부이익의 이연 등은 손익의 기업간 이전보다 연결납세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다. 연결그룹 내 기업간에 손실을 이익으로 대체하는 것은 연결그룹 전체의 담세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세를 부과하는 조세의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낮은 편이다. 즉, 조세의 중립성,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보다 부합되는 유형은 소득통산형이라 하겠다.

소득통산형은 제도의 체계면에서는 장점이 인정되는 반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손익대체형은 비교적 도입이 쉬운 반면 연결납세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기존의 법인세의 과세체계는 독일이나 영국보다는 미국과 유사하다. 예컨대, 독일식의 손익대체형은 독일법 특유의 이익각출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2. 연결납세 적용범위

가. 적용 대상 기업형태

지분율 등에 따라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기업범위를 결정하기 앞서 연결납세를 적용할 기업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첫째,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형태에 대해 적용할지 여부 둘째, 국외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할지 여부 셋째, 업종에 무관하게 적용할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1) 회사의 형태

우선, 주식회사이외의 법인인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을 세법상 연결그룹에 포함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규모가 작은 형태의 기업이 취하는 형태이며,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 같은 인적기업은 그룹화의 조직형태로는 적합하지 않다. 더욱이 이들 형태의 기업을 포함시킬 경우 연결납세에 따른 혜택보다 과세 및 납세의 복잡성이 증가할 것이다. 그 외에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는 공익법인, 종교법인 등의 비영리단체는 당연히 연결납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2) 국외 자회사

국외에 있는 자회사에 관해서는 대체로 외국의 제도도 과세권의 범위를 고려하여 이를 연결그룹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우리나라의 세제에 의해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외자회사는 그 회사가 소재하는 나라에서 통상 과세되므로 이중과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멕시코, 캐나다에 설립된 100% 자회사에 관해서는 제한적인 요건하에서 내국법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IRC1504(d))¹⁵⁾. 이것은 외국자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세제상의 유리·불리가 발생하게 되므로 세의 중립성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15)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 - 인접하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또한 재산의 권한 및 운용에 관해서 해당 외국의 법률을 준수할 목적으로 유지되는 법인에 관하여서는 그 자본주식(종사자의 적격주식을 제외)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내국법인이 소유하여 지배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은 해당 내국법인의 선택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간주한다.

3) 업종

서로 다른 업종의 자회사를 둔 경우 전체의 자회사를 연결그룹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결그룹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업종의 차이에 따라 연결그룹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금융업종과 비금융업종에 대한 구분은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방지, 업종 특성의 현격한 차이,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차이 등에 비추어 양자의 구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금융전업가가 아닌 경우 금융업종의 지분 보유에 제한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연결납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은 없다. 일반적으로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는 모회사의 소유 지분비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나. 지분비율 기준

1) 지분비율기준과 영향력기준

앞서 살펴본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영향력 기준에 의해 연결그룹에 포함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신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자회사가 연결납세그룹회사에 포함되는지 또는 포함할지를 지분비율 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이는 연결재무제표제도상 연결되는 기업과 연결납세제도상 연결되는 기업간에 차이가 있으며, 강제성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연결기업들은 지분기준 및 영향력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연결납세에 포함되는 연결기업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분기준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더욱이 적용여부를 선택적인 사항으로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연결재무제표가 연결그룹의 재무정보를 투자자 및 채권자에 제공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반면, 연결납세는 연결그룹의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세부담능력을 판단하는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이다.

2) 지분비율 결정시 고려할 요인

모회사와 90% 자회사간에 밀접한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이론적으로 세무상 연결을 배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실제 실질지배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기란 쉽지 않지만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각국의 경우에도 100%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각국에서 100% 소유기준을 채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각 국가의 회사법상 또는 세법상 등의 이유로 그것들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역사적인 배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프랑스는 종업원지주제도에 의해 종업원지주회사가 주식의 5%까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95%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가장 명료한 연결납세신고의 요건은 모회사가 직·간접적으로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자회사 또는 그 손자회사 등으로 연결그룹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원지주제도, 스톡옵션 등을 고려하면 소수주주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사원의 지분만큼 모회사의 지주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우리사주제의 경우 우리사주를 지분비율 계산시 어떻게 고려할지가 문제시된다. 아울러 우리사주제와 함께 스톡옵션제도에 의해 일부의 임원이나 간부사원이 부여받게 되는 자회사주식에 의해서도 100% 지분율은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에는 우리사주나 스톡옵션에 의해 희석되는 지분비율 만큼을 제

외한 채 100% 기준을 적용하거나 또는 지분비율 자체를 일정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 소수주주지분의 보호

연결 그룹의 주식보유비율의 기준을 100%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결그룹회사의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의 예를 통해 그 필요성을 살펴본다.

[사례]

모회사가 자회사주식 80%를 보유하고 소수주주가 나머지 20%를 소유하고 있으며 양사는 연결납세를 채택하고 있다. 1998년도와 1999년도 양사가 개별신고할 경우와 연결납세를 할 경우 과세소득 및 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세율은 30%로 가정). 그리고 양사는 연결납세액을 개별 소득액에 의해 안분하고 있다.

구분	모회사		자회사		연결	
	과세소득	세액	과세소득	세액	과세소득	세액
1998	1,000	300	(1,000)	0	0	0
1999	1,000	300	1,000	0	2,000	600

개별신고를 하는 경우 자회사는 1999년도에는 1998년 이월결손금에 의해 세액이 0이 된다. 연결신고를 하는 경우 1999년도 연결세액 600 중 자회사가 납부하는 세액은 소득비에 따라 300이다. 즉, 연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위 사례에서 1998년도 모회사는 연결납세신고에 의해 자회사의 손실로 인해 세가 감소하는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이는 자회사의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 만큼의 비혜택이 된다. 따라서, 이 소수주주의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 해결방법의 하나는 연결법인세액을 모회사간에 적정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결법인세액을 모회사와 자회사가 개별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각각 부담하였을 세액에 의해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익을 낸 회사가 결손을 낸 회사에 대하여 그 이익(연결상의 이익이 아니라, 개별신고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세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다. 연결납세제도의 선택 여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강제적용으로 하거나 임의선택적용 사항으로 할 수 있다. 연결납세의 적용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전자는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동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후자는 연결납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의선택 사항으로 하는 경우 기업은 연결그룹 전체의 조세부담을 고려하여 개별과세 또는 연결과세를 선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제적용으로 하면 조세회피 등에 대응할 수 있지만 임의선택으로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면 조세회피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임의선택으로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용(예컨대, 5년)의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기업의 임의선택 사항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자의적인 선택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연결납세를 선택할 경우 또는 배제할 경우 일정기간 이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이연

가. 과세이연 여부

동일 연결그룹내의 회사사이의 거래를 내부거래(intercompany transactions)라 한다. 내부거래에는 동일 연결그룹내의 회사사이의 자산의 매각이나 교환, 용역의 제공, 기술의 license, 자산의 임대, 금전의 대출 등이 포함된다.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이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내부이익은 연결그룹이외의 법인에 자산 등이 매각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내부이익은 그 거래가 연결그룹내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연결그룹을 단일의 납세자 요컨대, 단일의 회사로 파악하면 실제로는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의 이익은 연결 그룹이외의 법인에 자산이 매각된 시점에서 실현된다. 이 때문에 내부이익을 미실현이익이라 하는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각 법인 입장에서는 내부거래를 독립된 법인사이의 거래로서 취급하지만 연결납세신고에 있어서는 각 법인사이의 거래로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법인의 사업부사이의 거래로 취급한다.

연결그룹을 하나의 경제실체라고 보면 당연 연결기업의 미실현손익은 공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적용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부손익의 이연처리를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내부손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세시점에 차이만을 야기할 뿐

이므로 각 기업에서 발생한 양도손익을 개별과세신고 사항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임의사항으로 할 경우 기업은 과세시점을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세부담을 이후로 미루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하고 미실현손실에 대해서는 발생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임의사항인 경우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용·사전의 변경승인 등의 일정요건이 필요하다.

앞서 연결납세가 지분비율 100% 또는 그에 근접한 경우의 모자회사에만 허용되는 경우에는 세제의 간편성을 위해 내부미실현손익의 이연을 배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용·사전의 변경승인 등의 일정요건이 필요할 것이다.

나. 과세이연 방식

내부거래손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방법에는 장부가인수방식과 매도자손익이연방식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자의 방식을 사용하다가 모자회사간 지원수단으로 악용되자 이를 후자로 전환하였다. 내부거래손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손익이연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도법인이 내부이익을 포함하는 통상의 판매가액으로 재고자산을 판매한 경우 그 내부이익은 매수법인이 그 재고자산을 연결그룹외의 제삼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실현할 때까지 미실현이익으로서 과세를 이연한다. 이를 매도법인과세이연방식이라 하는데, 이의 장점은 일련의 거래에 있어서 이익의 귀속이 통상의 거래형태와 다르지 않은 것이며, 단점은 과세이연이라는 절차의 번거로움이다.

매수법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재고자산의 외부판매를 매도법인에 연락하는 것은 번잡하므로 연결결산시점에서 재고정리 등에 따라 매도법인의 내부이익을 조정한다. 이 재고자산 정리에 의한 내부이익 조정에 관해서는 연결재무제표에 있어서의 내부이익의 제거 계산을 참고로 해서 매수법인의 재고정리 내용과 매도법인에 의해 산정되는 적정 매출총이익률로부터 대상사업연도의 이연대상이 되는 내부이익액을 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연결그룹 법인이 내부거래로 제품을 타 그룹내 법인에 판매하였을 때 이 거래에 관련된 경리를 구분하고 처리한다. 그리고, 연결과세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미실현 내부이익을 산정한다. 연결그룹 법인에서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기말현재 제작과정에 있는 제품에 대한 내부이익액을 산정해야 한다.

○ 매도자손익이연방식 사례

연결그룹 외부에서 취득한 자산을 연결그룹내 회사간에 매매한 경우에 그 매각에 따른 내부이익은 연결그룹내 매도법인에서 차기이후로 과세가 이연된다. 연결그룹내 매수법인이 이를 연결그룹외부에 매각하였을 때 연결그룹내 매도법인에서 양도익을 실현이익으로 인식한다. 한편 매수법인은 매도법인에서 매입한 고정자산의 구입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을 실현손익으로 인식하여 계상한다.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에는 연결그룹내 법인 상호간의 고정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연결과세시에 제거함은 같지만, 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 및 비과세가 감가상각으로 인해 다소 복잡해진다.

[사례]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하고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 모회사는 1996년 초에 1,000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8년 초에 1,300에 자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자회사는 이를 2000년 초에 비연결사에 1,200에 매각하였다. 양사는 고정자산에 대해 정액법으로 10년간 상각하고 있다.

- 1996년, 1997년 : 모회사에 대해서는 매년 100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므로 1998년말 동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800이다. (취득가액 1,000 - 감가상각누계액 200)
- 1998년초 : 모회사에 대해서 발생한 500의 양도익(양도가액 1,300 - 장부가액 800)은 과세가 이연된다. 기장은 각 사에 대해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취득시점에서 자회사의 장부가액은 1,300이다.
- 1998년, 1999년 : 자회사는 장부가액 1,300을 기초로 매년 감가상각을 하는데, 1,300 중 모회사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즉, 800에 관해서는 모회사의 감가상각 방법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가정하면 이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매년 100이고, 나머지 장부가액 500에 대한 매년 감가상각비는 50이다. 즉 자회사의 매년 감가상각비는 150이다.

모회사로서는 이연된 양도익 500중 자회사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추가의 감가상각액 50를 매년 소득으로 인식하는 셈이다. 연결납세신고서에 있어서는 이 50의 양도익은 150의 감가상각과 상쇄되므로 결과적으로 100의 감가상각만이 남는다.

- 2000년 초 : 자회사는 동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이 1,000(취득가액 1,300 - 감가상각누계액 300)이므로 양도차익 200을 인식한다. 모회

사가 인식할 양도익은 1998년초 자회사에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500에서 자회사가 감가상각을 통해 소득으로 인식한 100을 차감한 400이다. 이는, 100은 1998년과 1999년 두 해 동안 자회사의 감가상각 과정을 통해 인식되었으므로 미실현 양도익은 400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모회사에서 직접 연결그룹 외부에 매각한 경우와 같다.

양도차익 600 = 매도가액1,200

- 장부가액600 (취득가액1,000 - 감가상각누계액400)

자회사의 양도차익 = 200

모회사의 양도차익 = 400

다. 내부거래손익의 실현 시기

매도법인이 이연한 내부손익의 실현은 다음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 매수법인이 고정자산을 그룹외부에 매각하였을 때
- 매수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하였을 때. 이 때는 감가상각의 부분에 해당하는 매도자의 내부이익이 실현이익으로 계상된다.
- 매도법인 또는 매수법인이 연결그룹에서 탈퇴하였을 때. 비연결그룹 법인에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자산을 구입한 법인이 연결그룹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비연결그룹에 해당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있더라도 연결그룹에서 이탈한 시점에서 이연되고 있는 내부이익에 대해 전액 과세한다.

라. 보유기간의 통산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양도익을 통산한 경우와 같이 자산의 보유기간 또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각각의 보유기간을 통산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¹⁶⁾

4. 이월결손금

자회사의 이익과 손실의 상쇄를 통한 절세는 연결납세제도의 장점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은 자회사의 모든 결손을 과연 통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냐는 것이다. 연결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결손을 통상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연결납세를 통한 조세회피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연결 전후 이월결손금의 통산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본다.

가.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한

1) 자회사의 연결이전의 이월결손금의 통산 불인정

16) 미국의 연방세법상 개인의 장기양도소득에는 저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의 통상의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39.6% 이지만 장기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28%이다. 그러나,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장단기 무관하게 세율이 적용된다. 과거에는 장기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것이 인정된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장단기 양도익·양도손을 상쇄하는 순서의 규정이 있다.

원칙적으로 연결납세신고서에 있어서 이익과 결손의 상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연결그룹에 가입한 이후 발생한 결손을 다른 그룹회사의 이익과 상쇄하는 것이다. 만약 이월결손금이 있는 회사가 연결그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참여사의 이월결손을 그 연결 그룹내부의 다른 회사의 이익과 상쇄할 수 있다면 적자회사를 매수하여 연결그룹에 가입시킴으로써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정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국의 제도는 연결그룹에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연결 후에 다른 연결그룹 회사들과 상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결납세를 선택한 연도에서 손익의 통산이 인정되지만, 개별신고년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연결신고년도에 이월을 어렵도록 하고 있다.

자회사의 연결이전의 이월결손금의 통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회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 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은 연결이후라도 자회사의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연결전 자회사의 결손금을 자회사의 소득으로부터도 공제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는 비연결그룹의 이월결손금 공제에 비해 차별적인 것이 된다.

[사례]

1998년 연결납세를 시작한 자회사에는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1,000이 있다. 1998년, 1999년 모회사와 자회사의 손익은 다음과 같다.

구분	모회사	자회사
1998년	1,000	600
1999년	800	(200)

- 1998년 : 자회사의 이월결손금 1,000을 모회사의 소득 1,000에서 상쇄할 수는 없으며, 단지 자회사의 소득 600과 상쇄가 가능하다.
 - 자회사의 이월결손금 공제 : 600 (자회사소득)
 - 연결과세소득 : 1,000
(모회사소득 1,000 + 자회사소득 600 - 자회사이월결손금공제 600)
 - 1999년 : 자회사의 이월결손금 미공제액 400 또한 자회사의 소득과 상쇄될 수 있는데, 1999년에는 자회사가 결손을 보고하였으므로 공제되지 못하여 이후 자회사 소득에서 공제된다.
 - 자회사의 이월결손금 공제 : 0
 - 연결과세소득 : 600 (모회사소득 800 - 자회사결손금 200)
-
-

2) 모회사의 연결전 이월결손금의 통산 인정

자회사의 연결이전 이월결손금은 연결소득 전체로부터 공제받지 못하고 대신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것과 달리, 모회사의 연결이전 이월결손금은 연결소득 전체와 통산할 수 있다. 자회사의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월결손금의 통산에 대해 제한이 있는 이상 모회사의 이월결손금 통산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 있어서는 자회사의 개별신고연도에서의 결손금을 연결그룹에 부담지우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모회사의 개별신고연도에서의 결손에 관해서는 이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사례]

1998년 연결납세를 시작한 모회사에는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1,000 이 있다. 1998년, 1999년 모회사와 자회사의 손익은 다음과 같다.

구분	모회사	자회사
1998년	600	200
1999년	800	(300)

- 1998년 : 모회사의 이월결손금 1,000이 연결소득 800 보다 크므로 이 한도에서 상쇄가 가능하다.
 - 모회사의 이월결손금 공제 : 800 (연결소득)
 - 연결과세소득 : 0
(모회사소득 600 + 자회사소득 200 - 자회사이월결손금공제 800)
- 1999년 : 모회사의 이월결손금 미공제액 200 또한 연결소득 전체로부터 공제된다.
 - 모회사의 이월결손금 공제 : 200
 - 연결과세소득 : 300
(모회사소득 800 - 자회사결손금 300 - 모회사이월결손금 200)

나. 기발생 미실현평가손실

자회사의 연결전 결손금은 연결 이후 자회사의 소득에서만 공제되고, 자회사의 연결 이후의 결손금은 연결 이후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 전체에서 공제되므로, 자회사는 손실을 미실현 상태로 두다가 연결 이후에 인식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자회사가 연결그룹 외부의 기업에 1,000의 고정자산을 800에 매각한 경우 그 양도손실 200은 연결그룹 가입 전후 통산에 차이가 있다. 자회사가 개별신고연도에서 이 고정자산을 매각하였으면 매각손실은 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다. 이 경우 이 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은 개별신고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므로 연결그룹의 다른 회사의 소득과 상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자회사가 연결그룹에 가입한 후 연결납세신고연도에서 이 고정자산을 매각하면 같은 손실이 공제 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예의 경우 고정자산의 손실은 실현되지 않았을 뿐 연결그룹 가입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연결그룹 가입이전에 인식한 이월결손금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연결그룹 가입 이후에 발생한 이러한 손실은 연결이후에 인식되더라도 자회사의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 있어서는 이러한 손실에 대해 기발생미실현 손실의 공제제한(built-in deduction)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개별신고연도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손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미실현의 손실도 개별신고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같이 연결납세신고연도 이월공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요컨대, 이러한 기발생미실현 손실은 그 손실이 발생한 회사의 소득과만 상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 규정에서는 연결그룹 형성시에 자산의 시장가액이 장부가액의 85%를 넘고 연결그룹이 이 자산을 10년을 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요컨대, 기발생미실현손실

의 금액이 작고 연결그룹이 장기에 걸쳐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 월결손금의 남용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발생미실현손실의 공제제한 규정은 연결납세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연결시점에서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장가액을 비교하는 평가문제는 많은 비용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결 이후 일정기간(가령 2-3년) 이후에 인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통산을 인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소득에서만 공제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자산에 적용되기 보다는 유형자산 등에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채고자산의 경우 매각손실은 일반적이지 않고 매각시점의 조정이 자의적인 부분이 크지 않을 것이다.

다. 연결그룹에서 이탈하는 경우의 이월결손금

연결납세법인에서 이탈한 경우 법인은 이탈 후 개별신고를 하게 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연결그룹의 이월결손금은 전액 연결그룹에 남아있는 회사들의 소득과 상쇄하는가 아니면 이탈법인도 이를 이월받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이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 있어서는 이 법인이 연결그룹에 속해있던 연도에 결손을 내고 이 법인이 연결그룹을 이탈한 연도에 연결그룹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연결이월결손금 중 이 법인이 낸 결손금을 이탈뒤 개별신고서에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탈법인이 이

어받을 수 있는 연결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당기연결결손금} &= \text{전년도로부터의 연결이월결손금} - \text{당기연결과세소득} \\ &\text{이탈법인에 이어받아가는 결손금액} \\ &= \frac{\text{당기연결결손금} \times \text{이탈법인의 당기결손금}}{\text{당기결손이 있는 법인의 결손금합계액}} \end{aligned}$$

우선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연결그룹의 이월결손금은 당연도의 연결그룹의 소득과 상쇄된다. 그리고, 공제할 수 없는 금액 중 이탈하는 법인에 귀속되는 결손금만이 이탈법인의 개별신고서에 이월된다. 이 경우 이탈하는 법인에 귀속되는 결손금은 연결결손금에 그 법인의 결손금과 전결손법인의 결손금합계액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개별회사가 개인신고를 하고 있으면 이월할 수 있었을 결손금액 전액을 승계한다. 단지 그 중 연결법인의 소득과 상쇄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나머지의 연결법인의 소득에 가산한다(결손금액의 이중이용의 배제).

라. 연결 그룹의 주주가 변동한 경우의 결손금공제의 제한

미국의 경우 1997년 8월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서 연결결손금은 2년간 소급공제되고, 20년간 이월공제(1997년 8월 5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은 3년 소급공제, 15년 이월공제)에 의해서 연결이익과 상쇄될 수 있다.¹⁷⁾

17)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에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

미국의 세법에는 법인의 주주에게 50%를 넘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에서 그와 같은 주주의 변동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가령 적자회사의 주식에 관해서 50%를 넘게 매수하면 그 회사의 이월결손금과 매수후의 소득을 상쇄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 Sec 제382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

3년간의 결손법인의 주주(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여 변동한 경우, 해당 결손법인의 지분변동전 이월결손금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해서 지분변동후의 각 이월연도의 이익과 상쇄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사용가능액(상쇄가능한도액)

$$= \text{주주변동직전의 법인의 시장가액} \times \text{장기면세채이율}$$

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월결손금의 금액이 얼마만큼 큰 금액이더라도 1년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내에서만 이익과 상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월결손금사용가능액이란 법인이 1년간 그 법인의 소득과 상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이다.

또한, 이러한 주식보유지분의 변경에 있어서 그 법인의 사업이 지분변동 후 2년이상 계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월이 전액 인정되지 않는다.

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13조). 그러나,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법인세법 제72조).

이 규정은 피매수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주식의 매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월결손금사용에 관한 제한규정은 연결납세신고를 하고 있는 법인이나 그룹에도 적용된다. 요컨대, 연결그룹에 참가하는 법인이나 연결그룹에서 이탈하는 법인 등에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연결그룹의 모회사의 주주가 변동한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연결납세 법인이 연결납세에서 탈퇴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당하다. 지분변동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사용가능액을 제한하는 대신, 기존에 받은 조세혜택을 연결탈퇴시 박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마. 개별신고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사용제한 (Separate Return Limitation Year : SRLY)

연결납세그룹에 속한 법인의 단체신고연도(혹은 다른 연결납세그룹에 포함되어 연결납세한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과세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①이 ②를 초과하는 금액밖에 사용할 수 없다.

- ① 당기연결과세소득액(이월결손금공제전이며 내부미실현이익조정후의 소득)이 SRLY 대상의 결손법인의 당기손익을 제외한 당기연결과세소득액을 초과하는 액
- ② 해당 법인에 귀속하는 단체신고연도의 이월결손금액

연결납세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납세후의 해당 법인의 고유의 이익으로만 상쇄할 수 있다. Reg.1.1502 - 21T(C)는 해당 결손법인 고유의 연결납세후의 누적이익을 초과하는 동 법인의 단체신고연도의 결손

금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결손법인이 연결납세연도에 이익을 계상하더라도 다른 기존 연결납세그룹의 손익상태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 단체연도의 결손금과 상쇄할 수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SRLY에 의한 제한 대상이 아니다.

- 연결납세그룹의 공통의 모회사(common parent)의 단체신고연도 즉, 보통의 모회사의 단체신고연도의 결손금은 SRLY의 제한대상이 되지 않고 연결납세후의 자회사의 이익과도 상쇄가능하다. 다만, 역취득(reverse acquisition) 및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흡수합병(down - stream merger)의 경우는 제외한다.¹⁸⁾
- 특정 연결납세연도의 전기간에 있어서 해당 연결납세그룹의 대상이었던 법인의 단체신고연도
- 법인의 전임자가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소급 또는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의 소급공제는 과거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인 반면, 이월공제는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하여 미래 법인세를 줄이는 것이다. 영속적인 기업을 가정할 경우 이월결손금은 과거든 미래든 소득에서 전체 공제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실제 각 국의 제도는 일정기간의 이월공제를 선호하고 있다.

18) 역취득이란 자기자본이 적은 적은 법인이 보다 큰 법인의 지배권 혹은 그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과 교환으로 취득는 경우로, 그 결과 가치가 큰 법인의 구주주가 가치가 작은 법인의 발행주식의 적정시가의 50%이상 소유하게 된다. 이 경우 세무상 가치가 큰 법인이 형식에 관계없이 가치가 작은 법인을 취득하여 공통의 모회사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바. 이월기간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해선 이월결손금의 소급공제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결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결결손금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의 일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 투자수정

가.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의 수정의 필요성

세법상 자회사주식은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에 의해 평가된다. 이는 시장성 여부 또는 중대한 영향력 여부에 따라 원가법과 공정가액법을 사용토록 한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장부상 자회사 주식의 가액은 곧 취득가액이다. 따라서, 세법상 그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기초로 양도손익을 계산하게 된다.

그런데, 원가법에 의해 자회사의 주식이 세법상 평가됨으로 인해 연결납세신고를 하고 있는 연결그룹 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세법상의 규정이 연결납세에 적용될 때 야기되는 문제를 통해 장부가액의 수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자회사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 이중공제

연결납세를 적용받는 연결그룹에서 결손이 발생한 자회사를 매각한 경우에는 결손을 이중으로 공제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자회사의 결손이

연결납세를 통해 모회사의 소득과 공제될 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주식의 매각시에 결손에 상응하는 금액의 양도손실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세법상의 자회사의 주식이 원가법에 의해 취득원가가 장부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중공제를 방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회사는 결손이 발생할 자회사를 취득하고 매각함으로써 세혜택을 이중으로 얻고자 할 것이다.

[사례]

모회사는 1998년 한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를 5,000에 취득하여 자회사화하여, 연결납세신고를 적용받게 되었다. 1998년도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은 각각 1,000, -1,000 이었으며, 모회사는 1999년에 자회사를 4,000에 매각하였다. 세율은 30%로 가정.

- 1998년 연결납세액
 - (모회사소득 1,000 + 자회사소득 -1,000) × 30% = 0
 -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 : 5,000
 - 1999년 매각시점의 자회사주식의 가치
 - 취득원가 5,000 - 자회사결손금 1,000 = 4,000
 - 매각손실 : 매각가액 4,000 - 장부가액 5,000 = -1,000
-
-

1998년 자회사의 결손금은 모회사의 소득과 통산되어 연결납세신고에 의한 세액은 없다. 모회사 입장에는 개별신고시와 비교하여 절세액이

300인 셈이다. 한편, 1999년 모회사는 자회사주식을 양도하면서 손실이 1,000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모회사의 개별신고 과정에서 손금으로 처리되어 그 만큼 과세소득이 줄어 세를 감소시킨다. 1999년 모회사의 절세액은 따라서 300이다.

즉, 모회사는 자회사의 결손에 대해 이중으로 소득계산시 공제함으로써 세혜택을 부당하게 받게된다.

2) 자회사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이중과세

자회사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달리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회사의 소득이 연결납세를 통해 모회사의 소득과 통산될 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주식의 매각시에 소득에 상응하는 금액의 양도이익에 대해 과세가 된다. 이는 세법상의 자회사의 주식이 원가법에 의해 취득원가가 장부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례]

모회사는 1998년 한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를 5,000에 취득하여 자회사화 하여, 연결납세신고를 적용받게 되었다. 1998년도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은 각각 1,000, 1,000이었으며, 모회사는 1999년에 자회사를 6,000에 매각하였다. 세율은 30%로 가정.

- 1998년 연결납세액

$$- (\text{모회사소득 } 1,000 + \text{자회사소득 } 1,000) \times 30\% = 600$$

$$- \text{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 : 5,000$$

- 1999년 매각시점의 자회사주식의 가치
 - 취득원가 5,000 + 자회사소득 1,000 = 6,000
 - 매각이익 : 매각가액 6,000 - 장부가액 5,000 = 1,000
-
-

1998년 자회사의 소득은 모회사의 소득과 통산되어 연결납세신고에 의해 과세되었다. 자회사의 소득에 의한 과세액은 300이다. 한편, 1999년 모회사는 자회사주식을 양도하면서 이익이 1,000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모회사의 개별신고 과정에서 익금으로 처리되어 그 만큼 과세소득이 늘고 세를 증가시킨다. 1999년 자회사 주식의 양도로 인한 과세액은 따라서 300이다.

즉, 모회사는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소득계산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의 수정

이러한 연결그룹내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이중공제나 이익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손익분만의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자회사 주식이 취득원가에 의해 장부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위의 사례에서 연결이후의 자회사의 손익 즉, 1998년도의 자회사의 손익을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에 반영시킨다. 그리고, 연결납세에 의한 자회사 주식의 양도손익은 수정된 장부가액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사례]

- 자회사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자회사주식 장부가의 수정
수정후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 자회사 주식의 취득원가 5,000 - 1998년 자회사 결손 1,000
= 4,000
 - 자회사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회사주식 장부가의 수정
수정후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 자회사 주식의 취득원가 5,000 + 1998년 자회사 소득 1,000
= 6,000
-

나. 투자가액의 수정(investment adjustment)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것은 손실의 이중공제나 소득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다.

위의 예에서 자회사주식의 매각가격은 취득원가에 각 연도의 결손 또는 과세소득으로부터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가한 금액이라고 하였지만 법인의 주식가치는 그 결손금이나 과세소득의 금액만큼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세무상의 결손금이나 과세소득에는 연결그룹이외의 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이 된 금액이나 기타 과세를 받지 않은 소득이 포함되고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소득은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가산되어야 할 항목이다.

또한, 당기손금산입할 수 없는 비용항목도 가미되진 않는다. 예를 들면, 접대비나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비용은 기발생하였으며 현금으로 지불되었다면 당연히 회사의 가치평가에 음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항목도 수정항목(감산항목)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수정은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과 이를 양도하는 시점의 시장가격 사이의 차이를 야기한 항목들을 반영하는 절차이다. 이를 통해 양도손익을 적정하게 계산하여 연결납세기 이중과세 또는 이중공제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는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에서 지분법에 의한 평가시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 조정과 유사하다.

자회사주식 장부가액의 수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산항목	당기이익	비연결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기타 비과세소득
감산항목	당기결손	당기손금 산입시 부인된 비용 (접대비, 기부금 등)	-

다. 자회사주식 양도손실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것은 손실의 이중공제나 소득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보자.

모회사는 1998년에 한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를 5000에 취득하고 자회사화하였으며 연결납세를 하였다. 자회사는 1999년도에 전 자산을 제3자에 대하여 5000에 매각하였는데, 매각된 자산의 장부가액은 1000이다. 1999년도 이 연결납세 그룹에는 자산의 매각손익만 발생하였다. 이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주식을 1998년에 5000에 매수하여 1999년에 동액으로 매각하였을 뿐인데 양도손실 4000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 있어서는 연결그룹 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라. 투자가액 수정 여부

자회사의 과거자료로부터 이런 수정을 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미국이외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가액의 수정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6. 기타 과제

가. 세수감소와 조세회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때 결손의 통산으로 인한 세수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결손금의 이월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장기적으로는 차이가 없을 것이며, 기업 그룹을 하나의 경제적인 단위라고 보는 이상 연결그룹내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대의 논리가 있다. 결손금이 충분히 이용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연결납세제도에서는 그 결손금의 이용비율이 높다는 의미에서 세수는 감소할 지도 모르지만 연결납세제도 그 자체가 세수의 감소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은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조직형태의 선택에 의한 세부담의 불균형 (unbalance)의 정정에 있다고 본다. 즉, 세의 중립성의 관점에서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것이다.

연결납세제도의 또 다른 필요성은 실질적인 과세에 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소득금액으로 보므로 담세력인 소득금액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측정된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형식적·표면적인 법률상의 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보다 몇 개의 회사로 구성되는 그룹전체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 형태이면 거기에서 생기는 소득금액의 합계를 과세표준(담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러한 연결납세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로 인한 세수감은 어느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기업그룹내 소득의 통산 과정에서 결손이 세부담을 줄여준다. 가령 50%를 초과 소유한 연결재무제표상의 연결자회사나 지분법을 적용받는 관련회사에 대해 통산한 손익을 그룹의 손익으로 가정하면 세수가 분명 감소하게 된다.

연결납세의 대상을 100% 소유한 자회사로 한정하더라도 자회사 중 손실을 보고한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 100% 자회사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세수감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업은 전혀 무관한 결손회사의 주식을 그 기업의 주주로부터 매수하여 100% 자회사로 만들고 손실을 통산하여 세부담을 줄이려 할 수 있다.

또한, 기업그룹내 내부거래의 미실현처리로 인해 법인세 감소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과세시점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법인세의 시간차이 외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내부거래의 미실현손익을 과세이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수감은 피할 수 있다.

세수감에 대한 대안으로 세율의 인상과 연결납세액에 대한 할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 연결납세로 인한 세수감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세를 할증한 예도 있다.

그러나, 이는 연결납세의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세수감을 세율 인상 또는 할증세로 보충하는 것은 곧 연결납세의 도입을 앓는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연결그룹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결손금의 공제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연결납세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세수감 문제는 제도상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 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통한 세수감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 연결납세가 결손금의 통산을 통해 세를 감소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기업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의 문제로 생각된다. 즉, 연결납세제도의 유용성 및 효율성 증대는 조세회피 방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이들을 규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예상되는 조세회피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의 행위와 가장 관련성이 깊은 항목은 이월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앞서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1) 연결납세그룹 가입전의 결손금

연결납세그룹 가입전의 결손금에 관해서는 연결납세 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지 않으면 결손회사를 자회사화할 유인이 존재한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연결그룹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그 이전

에 발생한 손실을 단순히 연결그룹내의 다른 회사의 이익과 상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즉, 연결납세제도는 연결그룹을 형성한 이후의 손익만을 통산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결그룹에 가입하기 이전의 손실은 당 기업의 미래 소득에서만 공제된다. 특정기업의 과거 손실을 연결그룹 이후의 다른 기업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2) 연결납세그룹 가입전의 자산의 평가손실

연결납세그룹 가입전의 자산에 내포되어 있는 즉, 평가손실을 안고 있는 자산에 관해서는 연결납세 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지 않으면 동 자산을 매입할 유인이 존재한다.

자산의 평가손실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연결그룹 가입직전에 해당 자산의 시가를 공시토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면 이후의 손실에 관해서는 연결그룹 내에서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연결그룹 가입전의 평가손실은 연결그룹내에서 상쇄되지 않는다.

3) 연결후의 결손의 통산 문제

연결그룹을 형성한 후라도 얼마동안 이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을 계상할 것 같은 회사를 연결납세 자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연결그룹에 가입한 이후 손익은 통산될 수 있으므로 세수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상관없는 손실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기업의 과거손실을 통산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지만, 당기 이후의 결손을 이용할 목적으로 한 연결납세는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4) 연결납세그룹에의 가입·이탈

연결납세그룹에의 가입·이탈을 무조건으로 인정하면 조세회피를 하기 위해서 가입·이탈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규제로서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또한, 모든 적용 자회사를 연결납세그룹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할 것인지 또는 선택적으로 가입토록 할 것인지에 따라 규제의 방법이 다를 것이다.

5) 연결납세그룹내의 자회사와 연결납세그룹외의 자회사와의 사이의 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

연결그룹내의 자회사와 연결그룹외의 자회사간의 소득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연결그룹에는 외국자회사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평가손실이 있는 자산을 외국의 자회사에 양도하여 손실을 계상토록 한 후에 다시 연결그룹내의 자회사에 양도하는 우회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우회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를 내부거래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결납세액의 배부

연결그룹내의 내부거래에 이러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의 이연이나 그룹 각사의 손익의 통산의 계산과정을 거친 후 연결과세소득이 계산된다. 이 후 연결세액을 각사에 배부한다. 미국의 경우 연결세액은 연결그룹의 한 회사가 그 연결그룹을 대표하여 세무당국에 연결세액을 납

부한다. 통상 이 그룹을 대표하는 회사는 연결그룹의 모회사이다. 연결 그룹의 모회사는 연결세액을 납부하더라도 그것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결세액은 연결그룹 각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배분이 필요하다.

1) 납세의무

연결납세의 신고·납부는 모회사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모회사와 자회사간에는 각 회사의 원래의 세부담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짊어진다. 모든 연결납세액에 관해서 연대납세의무를 짊어지는가에 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입법의 문제이지만 연결납세제도가 기업그룹을 하나의 경제적인 실체로서 과세한다고 하는 전제에 기초하므로 각 회사의 원래의 세부담을 한도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세감소를 피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결납세의 대상 지분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모회사에 납세의무를 지우고 모자회사간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배분방법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배분방법을 재무성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별소득비례방식, 개별세액비례방식, 증가세액배분방식, 절세효과배분방식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액의 배분에 의한 회사간 지원 및 그로 인한 소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분을 기업집단에 자의적으로 맡기기 보다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 세율

현행 세율은 2단계 구조¹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일세율과 마찬가지로 세율의 기업간 차이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회계연도 및 회계처리방법의 통일

1) 회계연도의 통일 여부

회계연도에 관해서는 연결납세제도가 연결그룹회사의 소득을 기준으로 그 그룹의 담세력을 측정하는 제도이므로 그 기간은 동일해야 할 것이다. 각 기업의 회계기간이 다르면 동일 연결그룹회사간 내부거래가 행하여진 경우 익금이나 손금의 인식시기가 달라지게 된다.

회계연도에 관해서는 연결그룹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통일을 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계산의 간편성 때문이다.

2) 회계처리방법의 통일여부

기업은 사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측정하는 회계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가령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는 제조판매하는 제품이나 구입하는 상품에 적합한 회계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 선택은 자의적이거나 보단 사업상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업종의 회사가 하나의 연결 그룹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기준에 관해서는 통일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19)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6%,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8%이다.

라. 주식의 이동

연결납세의 일반적인 내부손익의 이연에 따라 연결그룹내 법인간의 주식의 매매거래에 주식의 양도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주식이 그룹외부에 양도될 때까지 그 양도익의 과세는 이연된다. 그러나,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특수한 경우의 주식의 이동에 대해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1) 내부거래에 의한 손실이 있는 주식의 양도

연결그룹에 가입한 법인이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손실을 연결납세신고에서 실현시키는 경우 소위, BUILT-IN LOSS가 있을 때는 그 손실의 계상을 제한한다.

손실이 발생한 연결모회사의 소유주식(소유목적,비매매목적)을 연결자회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 그 손실이 거래가액에 반영되어 있으면 연결모회사의 내부거래에 의한 내부손실이 발생한다. 연결그룹외부의 기업에 양도하기까지 그 내부손실은 계상이 이연된다.

2) 그룹내 법인으로부터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

연결모회사의 주식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연결자회사가 모회사주식을 시가로 모회사에 양도하여 내부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모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한 경우에는 모회사가 그 주식을 이익소각하였기 때문에 연결그룹내 거래에서의 대응항목이 없다. 개별신고에서 자회사의 양도익은 익금이 되어 모회사 주식의 이익소각은 자본등 거래에 해당된다. 이 경우 이연원칙이 적용되어 모회사가 주식의 이익소각을 한 사업연도에 자회사이익을 계상한다.

3) 연결자회사의 증자

가) 유상증자

연결자회사가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를 연결모회사 등의 연결그룹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이는 출자인 자본거래로 연결납세신고의 손익과는 무관하다.

나) 무상증자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는 주주지분의 증감이 없으므로 연결납세신고의 손익과 무관하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는 배당과세의 문제가 있지만 연결그룹 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연결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연결자회사의 주식교환

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자기주식을 포함)과 교환에 의해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법인이나 주주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예는 법인의 설립·증자(현물출자), 조직변경의 경우이다.

현물출자에 의해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면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가) 자산을 단지 자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종래는 현물출자재산을 피출자법인이 발행한 증권도 교환취득자산으로 취급되었지만, 1989년 7월 11일 이후 현물출자의 대가로서 해당 피출

자법인의 주식이외의 재산을 출자받은 경우 해당 피출자자산이 교부금 (boot)으로 취급되게 되었다. 현물출자자는 교부금의 적정시가를 한도로 해당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인식해야 한다.

나) 이전 직후에 이전자가 자회사의 전종류의 주식의 적어도 80%를 소유하는 경우

이때 유의할 점은 이전자는 법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또한 복수일 수 있으며, 피현물출자법인은 신설법인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두 법인이상이 동시에 현물(현금포함)을 출자하고 출자직후에 두 법인이상의 현물출자자의 해당기존법인에 대한 지분합계가 80%이상이면, 그 거래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 이 적용은 현물출자재산에 대한 계속적지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자가 대가로서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단기에 매각 또는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한 피출자재산을 단기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이상의 조건에 합치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자산의 세무 장부가액을 교환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으로 함과 동시에, 피현물출자법인은 출자자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이어받는 것이다. 단지, 현물출자자가 현물출자에 있어서 인식한 이익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장부가액은 동액만큼 증가한다.

마. 법인세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법인세법의 각종 규정들은 개별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손금의 한도 및 손금산입·불산입 등에 대해 개별 법인의 자본, 자산 등을

기초로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는 기업그룹을 하나의 경제단위로서 과세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별 법인을 대상으로 한 이들 규정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 외에 가능한 고려 대안은 연결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이 규정을 재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산의 문제점은 계산 및 세제의 복잡성에 있다. 따라서, 간편법으로 모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간편법은 그러나 손금의 한도 및 손금산입 불산입에 있어서 비연결그룹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일부 중요 항목에 대해서만 재계산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지급이자

하나의 예로서 현행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법에서는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건설자금이자,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등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연결납세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규정은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등이다. 이 규정들에서는 일정한 한도 이상의 금액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한도 계산시 대상 기업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즉, 개별회사 또는 연결회사 전체 또는 모회사 입장에서 한도가 각각 달라지게 되는데 연결납세기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

아래 각 규정에서 지급이자, 차입금, 자기자본 등은 개별회사 또는 연결회사 전체 또는 모회사 입장에서 각각 달라지게 된다.

가)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법령 제54조)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자기자본의 5배(또는 1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 손금불산입액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총차입금} - \text{자기자본의 5배 (또는 15배)}}{\text{총차입금}}$$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차입금적수} - \text{자기자본적수} \times 5\text{배 (또는 15배)}}{\text{차입금적수}}$$

— 지급이자 : 총지급이자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

— 여신전문금융회사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15배

나)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조특령 제129조)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또는 1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비생산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 손금불산입액

$$\text{지급이자} \times \frac{\min\{\text{타법인주식} + \text{임야, 차입금} - \text{자기자본} \times 2(\text{또는 } 1)\}}{\text{총차입금}}$$

- 지급이자 : 총지급이자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

-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 건설자금이자

-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자기자본×1

다)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법령 제53조)

- 비업무용부동산, 업무무관동산,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급이자 중 다음 식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 손금불산입액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비업무용부동산} + \text{업무무관동산} + \text{업무무관가지급금}}{\text{총차입금}}$$

- 지급이자 : 총지급이자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

—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 건설자금이자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이 외에도 법인세법에서 검토되어야 할 규정은 접대비, 기부금, 대손충당금, 적정유보초과소득, 청산소득 등이다.

2) 기타 예

가) 접대비

기밀비 등 지출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금액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건당 5만원이상의 접대비를 제외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다음 한도 이상은 손금불산입한다(법법 제25조).

$$\text{한도액} = 12,000,000(\text{중소기업은 } 18,000,000) + \text{매출액} \times \text{적용률}$$

적용률	100억이하	20/10,000
	100억-500억	2천만원 + 100억초과액 × 10/10,000
	500억초과	6천만원 + 500억초과액 × 3/10,000

접대비의 경우에는 개별 자회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

나) 기부금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누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 전액에 대

해 손금불산입하고 있다(법법 제24조).

- 법정기부금의 한도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계상액 + 지정기부금 계상액) - 이월결손금
- 지정기부금의 한도 = (법정기부금 한도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5/100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이 후 3년간 이월하여 지정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 미달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위 식의 자본금기준과 소득금액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가 문제이다.

다)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한도

$$= \text{당기말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times \text{설정률}$$

$$\text{— 설정률} : \max\{ 1\%(\text{금융기관은 } 2\%), \text{대손금/채권잔액}\}$$

기업그룹간의 채권은 대손충당금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업무의 증가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 기업그룹을 하나의 단위로 하면 그 중에는 여러 업종이 있기 마련인데, 기업규모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는 충당금 설정비율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 적정유보초과소득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해 15%의 세율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는 지분분산이 적은 비상장기업이 배당 등에 의한 소득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소득을 과다하게 사내에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각사업연도의 유보소득 : $\min(\text{세무상유보}, \text{회계상유보})$
- 적정유보소득 : $\max(\text{배당가능이익} \times 50\%, \text{자기자본} \times 10\%)$
- 적정유보초과소득 : 각사업연도의 유보소득 - 적정유보소득
- 세율 : 15%

유보금과세에 관해서는 상기의 유보공제액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가 된다.

마) 청산소득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금액 \times 세율

○ 청산소득

-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자기자본의 총액)
-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

-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
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
-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
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
계 -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
- 세율 : 법인세율 적용

청산소득 또한 연결납세에 포함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가 우선 검
토되어야 한다.

<표 IV-1> 연결납세제도의 주요 검토사항

범주	검토사항
유형	· 소득통산형 또는 손익대체형
범위	· 기준 : 지분비율기준 또는 영향력기준 · 회사형태 : 주식회사이외의 회사 포함여부 · 업종 : 금융업종 별도 여부 · 국외자회사 배제 여부
지분비율 결정시 고려사항	· 우리스주, 스톡옵션 고려 여부 · 소수주주지분의 보호 ·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지주회사법 고려
선택	· 강제 또는 선택자유 · 계속 또는 중지자유
내부거래손익	· 과세이연방식 : 매도자손익이연방식 또는 장부가인수방식 · 미실현손익 인식 시기 ·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자회사 연결이전 결손금의 처리 · 기발생 미실현 평가손실의 처리 · 연결이탈시 이월결손금의 분배 · 주주의 변동시 결손금의 처리 · 이월기간
투자수정	· 투자수정여부 · 수정항목 · 자회사주식양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기타	· 세수감과 조세회피의 방지 · 연결납세액의 배분 · 회계연도 및 회계처리방법의 통일 · 법인세법의 타 규정과의 관계 · 주식의 이동

V. 연결납세제도 도입 방안

1. 연결납세제도 유형 및 연결의 범위
2. 과세이연 및 소득공제
3. 기타 검토사항

V. 연결납세제도 도입 방안

1. 연결납세제도 유형 및 연결의 범위

앞서 외국의 연결납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검토과제들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각 검토과제에 대한 도입방안을 살펴본다.

가.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연결납세제도 유형의 선택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취지와 도입의 용이성, 과세체계, 도입에 따른 조세회피 등의 부작용 방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조직형태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과 실질 담세력에 기초한 과세, 세제의 유사성 등의 관점에서는 소득통산형이 손익대체형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손익대체형에 비해서 다소 복잡한 면이 있지만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하겠다. 더욱이 손익대체형은 영국, 독일 등 자국의 제도의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 다만, 소득통산형을 도입할 경우에는 제도상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법인세제의 유사성,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소득통산형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본 장에서는 소득통산형을 전제로 검토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적용대상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적합한 주식회사이외의 회사는 이를 연결납세에 포함시킬 경우 연결납세에 따른 혜택보다 과세 및 납세의 복잡성이 증가할 것이므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국외에 있는 자회사에 관해서는 대체로 외국의 제도도 과세권의 범위를 고려하여 이를 연결그룹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업종과 비금융업종의 자회사를 모두 보유한 경우 양자를 모두 연결그룹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이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금융업종과 금융업종은 업종의 특성이 서로 다르고 재무제표 항목 등도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에 대해서는 각각 연결납세를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 연결자회사의 지분비율

1)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지주회사제도의 지분관련 규정

현실적으로 지분율에 의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을 검토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안들이 우선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가) 연결재무제표의 대상 기업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에 의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국내외의 회사를 작성대상으로 한다.

- ①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 ②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대출자자인 경우
- ③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대출자자인 경우
- ④ 주식회사가 계약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 ⑤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 ⑥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 ⑦ 기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①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신설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이 70억원에 미달하는 회사

- ②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될 주식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 ③ 전쟁·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
- ④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배·종속관계가 다음 사업연도 중에 해소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종속회사

나) 결합재무제표의 대상 기업

결합대상기업집단 및 그 계열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및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다. 이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은 직전연도에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을 포함하되, 계열회사는 외국에 소재하는 모든 형태의 회사(해외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는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① 전쟁·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회사

- ②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신설회사의 경우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 해외계열회사의 경우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70억원에 미달하는 회사로서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크지 아니하거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기가 곤란하여 결합재무제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회사
- ③ 청산중에 있는 회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될 회사와 기타 공신력 있는 재무제표 작성이 불가능하여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결합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회사

다음에 해당되는 결합대상기업집단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그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 ① 결합대상계열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
- ②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

다) 지주회사법 하의 대상 기업

자회사 지분율이 50%이상. 단, 상장사인 경우에는 30% 이상

2) 대안의 비교

우선, 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의 연결대상은 지분율기준이 아닌 실질 지배력기준에 의해 범위가 결정되므로 연결납세기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분비율이 과반수 내외의 기업들이 연결납세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연결세액의 계산과정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소수주주 보호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지분비율이 높기 때문에 연결납세의 적용시 소수주주의 문제가 적을 수 있다. 더욱이 모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 규정에 의해 지주회사 설립이후의 세제가 완비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행 지주회사 규정에 의하면 지분비율이 다소 낮은 기업이 연결납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연결납세제의 도입초기에는 가능한 한 세제의 복잡성을 줄이고 연결납세로 인해 대두될 수 있는 세수감소, 조세회피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음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결납세제를 도입하는 초기에는 제도적인 안정성과 악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100%지분의 자회사에 한정하거나, 지주회사법하의 지주회사 중 지분비율이 90%-100%인 모자회사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주회사제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지분이 30-50% 정도의 기업들이 포함될 것이므로 이월결손금공제 및 소수주주 보호 등에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연결납세제도의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제도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안이다.

라. 연결납세제도의 선택

일반적으로 강제적용으로 하면 조세회피 등에 대응할 수 있지만 임의선택으로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면 조세회피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기업의 임의선택 사항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자의적인 선택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연결납세를 선택할 경우 또는 배제할 경우 일정기간 이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과세이연 및 소득공제

가. 과세이연 여부

연결납세가 지분비율 100% 또는 그에 근접한 경우의 모회사에만 허용되는 경우에는 세제의 간편성을 위해 내부미실현손익의 이연을 배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용·사전의 변경승인 등의 일정요건이 필요할 것이다.

과세이연을 이를 임의사항으로 할 경우 기업은 과세시점을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세부담을 이후로 미루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임의사항인 경우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용·사전의 변경승인 등의 일정요건이 필요할 것이다.

과세이연을 배제할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나. 개별신고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사용제한

자회사의 연결이전 결손금을 연결이후에 소득통산에 사용하게 할 경우 조세회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자회사의 연결이전 결손금은 기존의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에 따라 개별 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기발생 미실현평가손실의 공제제한

자회사의 연결전 결손금은 연결 이후 자회사의 소득에서만 공제되고, 자회사의 연결 이후의 결손금은 연결이후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 전체에서 공제되므로, 자회사는 손실을 미실현 상태로 두다가 연결 이후에 인식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외의 경우 고정자산의 손실은 실현되지 않았을 뿐 연결그룹 가입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연결그룹 가입이전에 인식한 이월결손금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연결그룹 가입 이후에 발생한 이러한 손실은 연결 이후에 인식되더라도 자회사의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 연결그룹에서 이탈하는 경우의 이월결손금의 공제

연결납세법인에서 이탈한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연결그룹의 이월결손금의 일부를 이탈법인도 이를 이월받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자회사주식 양도손실의 공제 금지

자회사주식의 양도를 통한 세감소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결그룹 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기타 검토사항

가. 투자수정여부

자회사의 과거자료로부터 투자가액의 수정을 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미국이외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가액의 수정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나. 세수감 및 조세회피

세수감에 대한 대안으로 세율의 인상과 연결납세액에 대한 할증세는 연결납세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 보다는 오히려 연결그룹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결손금의 공제 제한 및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의 문제이다. 즉, 연결납세제도의 유용성 및 효율성 증대는 조세회피 방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다.

다. 납세의무

조세감소를 피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결납세의 대상 지분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모회사에 납세의무를 지우고 모자회사간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액의 배분에 의한 회사간 지원 그로 인한 소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액의 배분을 기업집단에 자의적으로 맡기기 보다는 허용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 회계연도 및 회계처리방법의 통일 여부

회계연도에 관해서는 연결납세제도가 연결그룹회사의 소득을 기준으로 그 그룹의 담세력을 측정하는 제도이므로 그 기간은 동일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은 자의적이라기 보다는 사업상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선택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마. 법인세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법인세법의 각종 규정들은 개별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손금의 한도 및 손금산입·불산입 등에 대해 개별 법인의 자본, 자산 등을 기초로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는 기업그룹을 하나의 경제단위로서 과세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별 법인을 대상으로 한 이들 규정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 외에 가능한 고려 대안은 연결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이 규정을 재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산의 문제점은 계산 및 세제의 복잡성에 있다. 따라서, 간편법으로 모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간편법은 그러나 손금의 한도 및 손금산입·불산입에 있어서 비연결그룹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일부 중요 항목에 대해서만 재계산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김영덕, 『고급회계』, 세학사, 1999
- 김정국·유인금, “결합 및 연결회계제도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1998.6
- 김진수,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과세문제”,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1999.4(제34호)
- 김진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1999.11(제41호)
- 김형태·김문현, “공기업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 개선 - 스톡옵션을 중심으로-”, 한국증권연구원, 2000.5
- 박범호·오준환, 『국제회계 : 자본시장 국제화의 관점』, 무역경영사, 1998
- 박호근, 『고급회계 : 연결·합병·외환·파생상품』, 법무사, 1998
- 이광재, “결합채무제표의 유용성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 한국증권학회, 2000년 증권정책 심포지엄
- 전국경제인연합회, “30대 그룹 지정제도 : 주요 쟁점과 현실”, 2000.5
- 한상범·이은정,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한국증권연구원, 2000.12
- 한상범·김문현, “종합금융서비스의 시대 : 금융지주회사”, 한국증권연구원, 2001.1
- 八ノ尾順一, 『入門 連結納稅制度』, 財經詳報社, 1999.11
- 日本經濟新聞社, 『總解説 連結納稅制度』, 1998.7

152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大崎 貞和, “持株會社設立の解禁と金融持株會社”, 野村總合研究所, 1998
년 겨울호

西本 宣典, “早期導入が期待去れる連結納稅制度について”, 月刊資本市場,
1999.10 (No.170)

三谷明彦, “連結會計とグループ經營”, 第一勸業銀行, 1999.6.29

森信茂樹, “聯結納稅制度の問題點”, 商事法務, 1999.11.25

財務省, “各國と企業集團稅制と概要”, 稅制調査會, 1999.9.17

財務省, “連結納稅制度主要檢討項目”, 稅制調査會, 1999.11.19

부록

1. 세법의 결혼금 관련 규정
2. 미국의 연결납세 규정

[부록 1] 세법의 결손금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 12. 28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1998. 12. 31 개정)
- ②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③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규칙 제4조 【결손금 공제】

- ① 법 제13조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결손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1.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1999. 5. 24 개정)
 - 2. 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발전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이월결손금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1998. 12. 28 신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1998. 12. 28 신설)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1998. 12. 28 신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신설)
-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①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은 그 범위액에서 당해 결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③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④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 또는 동일

인이 2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31 개정)

2.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1999. 12. 31 개정)

⑤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현황에 의하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공제한 후 제4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결손금은 제4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부록 2] 미국의 연결납세 규정

Full Contents of TITLE 26 - INTERNAL REVENUE CODE

Subtitle A - Income Taxes

Full Contents of CHAPTER 6 - CONSOLIDATED RETURNS

Subchapter A - Returns and Payment of Tax

Sec. 1501. Privilege to file consolidated returns

Sec. 1502. Regulations

Sec. 1503. Computation and payment of tax

Sec. 1504. Definitions

Sec. 1505. Cross references

1. Sec. 1501. Privilege to file consolidated returns

STATUTE

An affiliated group of corporations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have the privilege of making a consolidated return with respect to the income tax imposed by chapter 1 for the taxable year

in lieu of separate returns. The making of a consolidated return shall be upon the condition that all corporations which at any time during the taxable year have been members of the affiliated group consent to all the consolidated return regulations prescribed under section 1502 prior to the last day prescribed by law for the filing of such return.

The making of a consolidated return shall be considered as such consent.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which is a member of the affiliated group for a fractional part of the year, the consolidated return shall include the income of such corporation for such part of the year as it is a member of the affiliated group.

2. Sec. 1502. Regulations

STATUTE

The Secretary shall prescribe such regulations as he may deem necessary in order that the tax liability of any affiliated group of corporations making a consolidated return and of each corporation in the group, both during and after the period of affiliation, may be returned, determined, computed, assessed, collected, and adjusted, in such manner as clearly to reflect the income-tax liability and the various factors necessary for the determination of such liability, and in order to prevent avoidance of such tax liability.

Dual Resident Companies

Pub. L. 100-647, title VI, Sec. 6126, Nov. 10, 1988, 102 Stat. 3713, provided that:

(a) General Rule. - In the case of a transaction which -

- (1) involves the transfe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Nov. 10, 1988) by a domestic corporation, with respect to which there is a qualified excess loss account, of its assets and liabilities to a foreign corporation in exchange for all of the stock of such foreign corporation, followed by the complete liquidation of the domestic corporation into the common parent, and
- (2) qualifies, pursuant to Revenue Ruling 87-27, as a reorganization which is described in section 368(a)(1)(F) of the 1986 Code, then, solely for purposes of applying Treasury Regulation section 1.1502-19 to such qualified excess loss account, such foreign corporation shall be treated as a domestic corporation in determining whether such foreign corporation is a member of the affiliated group of the common parent.

(b) Treatment of Income of New Foreign Corporation. -

- (1) In general. - In any case to which subsection (a) applies, for purposes of the 1986 Code -

- (A) the source and character of any item of income of the foreign corpor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a) shall be determined as if such foreign corporation were a domestic corporation,
- (B) the net amount of any such income shall be treated as subpart F income (without regard to section 952(c) of the 1986 Code), and
- (C) the amount in the qualified excess loss account referred to in subsection (a) shall -
 - (i) be reduced by the net amount of any such income, and
 - (ii) be increased by the amount of any such income distributed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common parent described in subsection (a).
- (2) Limitation. - Paragraph (1) shall apply to any item of income only to the extent that the net amount of such income does not exceed the amount in the qualified excess loss account after being reduced under paragraph (1)(C) for prior income.
- (3) Basis adjustments not applicable. - To the extent paragraph (1) applies to any item of income, there shall be no increase in basis under section 961(a) of such Code on account of such income (and there shall be no reduction in basis under section 961(b) of such Code on account of an exclusion attributable to the inclusion of such income).
- (4) Recognition of gain. - For purposes of paragraph (1), if the foreign corpor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a) transfers any property acquired by such foreign corporation in the transac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a) (or transfers any other property the

basis of which is determined in whole or in part by reference to the basis of property so acquired) and (but for this paragraph) there is not full recognition of gain on such transfer, the excess (if any) of -

- (A)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transferred, over
- (B) its adjusted basis, shall be treated as gain from the sale or exchange of such property and shall be recognized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Proper adjustment shall be made to the basis of any such property for gain recognized under the preceding sentence.

(c) Definitions. -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

- (1) Common parent. - The term 'common parent' means the common parent of the affiliated group which included the domestic corpor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a)(1).
- (2) Qualified excess loss account. - The term 'qualified excess loss account' means any excess loss account (within the meaning of the consolidated return regulations) to the extent such account is attributable -
 - (A) to taxable years beginning before January 1, 1988, and
 - (B) to periods during which the domestic corporation was subject to an income tax of a foreign country on its income on a residence basis or without regard to whether such income is from sources

in or outside of such foreign country. The amount of such account shall be determined as of immediately after the transac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a) and without,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diminution for any future adjustment.

- (3) Net amount. - The net amount of any item of income is the amount of such income reduced by allocable deductions as determined under the rules of section 954(b)(5) of the 1986 Code.
- (4) Second same country corporation may be treated as domestic corporation in certain cases. - If -
 - (A) another foreign corporation acquires from the common parent stock of the foreign corpor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a) after the transac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a),
 - (B) both of such foreign corporations are subject to the income tax of the same foreign country on a residence basis, and
 - (C) such common parent complies with such reporting requirements a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or his delegate may prescribe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such other foreign corporation shall be treated as a domestic corporation in determining whether the foreign corpor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a) is a member of the affiliated group referred to in subsection (a) (and the rules of subsection (b) shall apply (i) to any gain of such other foreign corporation on any disposition of such stock, and (ii) to any other income of such other foreign corporation except to the extent it establishes to the satisfaction of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or his delegate that such income is not attributable to property acquired from the foreign corpor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a)).

Special Rule For Disposition Of Stock Of Subsidiary

Pub. L. 99-514, title VI, Sec. 647, Oct. 22, 1986, 100 Stat. 2294, provided that: 'If for a taxable year of an affiliated group filing a consolidated return ending on or before December 31, 1987, there is a disposition of stock of a subsidiary (within the meaning of Treasury Regulation section 1.1502-19), the amount required to be included in income with respect to such disposition under Treasury Regulation section 1.1502-19(a) shall, notwithstanding such section, be included in income ratably over the 15-year period beginning with the taxable year in which the disposition occurs. The preceding sentence shall apply only if such subsidiary was incorporated on December 24, 1969, and is a participant in a mineral joint venture with a corpor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foreign country in which the joint venture mineral project is located.'

Sec. 1503. Computation and payment of tax

STATUTE

(a) (General rule)

In any case in which a consolidated return is made or is required to be made, the tax shall be determined, computed, assessed, collected, and adjus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under section 1502 prescribed before the last day prescribed by law for the filing of such return.

(b) ((b) Repealed. Pub. L. 94-455, title X, Sec. 1052(c)(5), Oct. 4, 1976, 90 Stat. 1648)

(c) Special rule for application of certain losses against income of insurance companies taxed under section 801

(c)(1) In general

If an election under section 1504(c)(2) is in effect for the taxable year and the consolidated taxable income of the members of the group not taxed under section 801 results in a consolidated net operating loss for such taxable year, then under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the amount of such loss which cannot be absorbed in the applicable carry-back periods against the taxable income of such members not taxed under section 801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consolidated taxable income of the affiliated group for such taxable year to the extent of 35 percent of such loss or 35 percent of the taxable income of the members taxed under section 801, whichever is less. The unused portion of such loss shall be available as a carryover, subject to the same limitations (applicable to

the sum of the loss for the carryover year and the loss (or losses) carried over to such year), in applicable carryover years.

(c)(2) Losses of recent nonlife affiliate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net operating loss for a taxable year of a member of the group not taxed under section 801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taxable income of a member taxed under section 801 (either for the taxable year or as a carryover or carryback) if such taxable year precedes the sixth taxable year such members have been members of the same affiliated group (determined without regard to section 1504(b)(2)).

(d) Dual consolidated loss

(d)(1) In general

The dual consolidated loss for any taxable year of any corporation shall not be allowed to reduce the taxable income of any other member of the affiliated group for the taxable year or any other taxable year.

(d)(2) Dual consolidated loss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

(d)(2)(A) In general

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B), the term 'dual consolidated loss' means any net operating loss of a domestic corporation which is subject to an income tax of a foreign country on its income without regard to whether such income is from sources in or outside of such foreign country, or is subject to such a tax on a residence basis.

(d)(2)(B) Special rule where loss not used under foreign law

To the extent provided in regulations, the term 'dual consolidated loss' shall not include any loss which, under the foreign income tax law, does not offset the income of any foreign corporation.

(d)(3) Treatment of losses of separate business units

To the extent provided in regulations, any loss of a separate unit of a domestic corpor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this subsection in the same manner as if such unit were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such corporation.

(d)(4) Income on assets acquired after the loss

The Secretary shall prescribe such regulations as may be necessary or appropriate to prevent the avoidance of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by contributing assets to the corporation with the dual consolidated loss after such loss was sustained.

(e) Special rule for determining adjustments to basis

(e)(1) In general

Solely for purposes of determining gain or loss on the disposition of intragroup stock and the amount of any inclusion by reason of an excess loss account, in determining the adjustments to the basis of such intragroup stock on account of the earnings and profits of any member of an affiliated group for any consolidated year (and in determining the amount in such account) -

- (A) such earnings and profits shall be determined as if section 312 were applied for such taxable year (and all preceding consolidated years of the member with respect to such group) without regard to subsections (k) and (n) thereof, and
- (B) earnings and profits shall not include any amount excluded from gross income under section 108 to the extent the amount so excluded was not applied to reduce tax attributes (other than basis in property).

(e)(2)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

(e)(2)(A) Intragroup stock

The term 'intragroup stock' means any stock which -

- (i) is in a corporation which is or was a member of an affiliated group of corporations, and

(ii) is held by another corporation which is or was a member of such group.

Such term includes any other property the basis of which is determined (in whole or in part) by reference to the basis of stock described in the preceding sentence.

(e)(2)(B) Consolidated year

The term 'consolidated year' means any taxable year for which the affiliated group makes a consolidated return.

(e)(2)(C) Application of section 312(n)(7) not affected

The reference in paragraph (1) to subsection (n) of section 312 shall be treated as not including a reference to paragraph (7) of such subsection.

(e)(3) Adjustments

Under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proper adjustments shall be made in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1) -

(A) in the case of any property acquired by the corporation before consolidation,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adjusted basis of such property for purposes of computing taxable income and its adjusted basis for purposes of computing earnings and profits, and

(B) in the case of any property, for any basis adjustment under section 50(c).

(e)(4) Elimination of election to reduce basis of indebtedness

Nothing in the regulations prescribed under section 1502 shall permit any reduction in the amount otherwise included in gross income by reason of an excess loss account if such reduction is on account of a reduction in the basis of indebtedness.

(f) Limitation on use of group losses to offset income of subsidiary paying preferred dividends

(f)(1) In general

In the case of any subsidiary distributing during any taxable year dividends on any applicable preferred stock -

(A) no group loss item shall be allowed to reduce the disqualified separately computed income of such subsidiary for such taxable year, and

(B) no group credit item shall be allowed against the tax imposed by this chapter on such disqualified separately computed income.

(f)(2) Group items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

(f)(2)(A) Group loss item

The term 'group loss item' means any of the following items of any other member of the affiliated group which includes the subsidiary:

(i) Any net operating loss and any net operating loss carryover or carryback under section 172.

(ii) Any loss from the sale or exchange of any capital asset and any capital loss carryover or carryback under section 1212.

(f)(2)(B) Group credit item

The term 'group credit item' means any credit allowable under part IV of subchapter A of chapter 1 (other than section 34) to any other member of the affiliated group which includes the subsidiary and any carryover or carryback of any such credit.

(f)(3) Other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

(f)(3)(A) Disqualified separately computed income

The term 'disqualified separately computed income' means the portion of the separately computed taxable income of the subsidiary which does not exceed the dividends distributed by the subsidiary during the taxable year on applicable preferred stock.

(f)(3)(B) Separately computed taxable income

The term 'separately computed taxable income' means the separate taxable income of the subsidiary for the taxable year determined -

(i) by taking into account gains and losses from the sale or exchange of a capital asset and section 1231 gains and losses,

(ii) without regard to any net operating loss or capital loss carryover

or carryback, and

(iii) with such adjustments as the Secretary may prescribe.

(f)(3)(C) Subsidiary

The term 'subsidiary' means any corporation which is a member of an affiliated group filing a consolidated return other than the common parent.

(f)(3)(D) Applicable preferred stock

The term 'applicable preferred stock' means stock described in section 1504(a)(4) in the subsidiary which is -

- (i) issued after November 17, 1989, and
- (ii) held by a person other than a member of the same affiliated group as the subsidiary.

(f)(4) Regulations

The Secretary shall prescribe such regulations as may be necessary or appropriate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subsection, including regulations -

- (A) to prevent the avoidance of this subsection through the transfer of built-in losses to the subsidiary,
- (B) to provide rules for cases in which the subsidiary owns (directly or indirectly) stock in another member of the affiliated group, and
- (C) to provid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subsection where dividends are not paid currently, where the redemption and liquidation

rights of the applicable preferred stock exceed the issue price for such stock, or where the stock is otherwise structured to avoid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Sec. 1504. Definitions

STATUTE

(a) Affiliated group defined

For purposes of this subtitle -

(a)(1) In general

The term 'affiliated group' means -

(A) 1 or more chains of includible corporations connected through stock ownership with a common parent corporation which is an includible corporation, but only if -

(B)

(i) the common parent owns directly stock meeting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2) in at least 1 of the other includible corporations, and

(ii) stock meeting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2) in each of the

includible corporations (except the common parent) is owned directly by 1 or more of the other includible corporations.

(a)(2) 80-percent voting and value test

The ownership of stock of any corporation meets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if it -

- (A) possesses at least 80 percent of the total voting power of the stock of such corporation, and
- (B) has a value equal to at least 80 percent of the total value of the stock of such corporation.

(a)(3) 5 years must elapse before reconsolidation

(a)(3)(A) In general

If -

- (i) a corporation is included (or required to be included) in a consolidated return filed by an affiliated group for a taxable year which includes any period after December 31, 1984, and
- (ii) such corporation ceases to be a member of such group in a taxable year beginning after December 31, 1984, with respect to periods after such cessation, such corporation (and any successor of such corporation) may not be included in any consolidated return filed by the affiliated group (or by another affiliated group with the same common parent or a successor of such common parent) before the 61st month beginning after its first taxable year

in which it ceased to be a member of such affiliated group.

(a)(3)(B) Secretary may waive application of subparagraph (A)

The Secretary may waive the application of subparagraph (A) to any corporation for any perio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e Secretary may prescribe.

(a)(4) Stock not to include certain preferred stock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stock' does not include any stock which -

(A) is not entitled to vote,

(B) is limited and preferred as to dividends and does not participate in corporate growth to any significant extent,

(C) has redemption and liquidation rights which do not exceed the issue price of such stock (except for a reasonable redemption or liquidation premium), and

(D) is not convertible into another class of stock.

(a)(5) Regulations

The Secretary shall prescribe such regulations as may be necessary or appropriate to carry out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gulations -

(A) which treat warrants, obligations convertible into stock, and other similar interests as stock, and stock as not stock,

(B) which treat options to acquire or sell stock as having been

exercised,

- (C) which provide that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2)(B) shall be treated as met if the affiliated group, in reliance on a good faith determination of value, treated such requirements as met,
- (D) which disregard an inadvertent ceasing to meet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2)(B) by reason of changes in relative values of different classes of stock,
- (E) which provide that transfers of stock within the group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whether a corporation ceases to be a member of an affiliated group, and
- (F) which disregard changes in voting power to the extent such changes are disproportionate to related changes in value.

(b) Definition of 'includible corporation'

As used in this chapter, the term 'includible corporation' means any corporation except -

- (1) Corporations exempt from taxation under section 501.
- (2) Insurance companies subject to taxation under section 801.
- (3) Foreign corporations.
- (4) Corporations with respect to which an election under section 936 (relating to possession tax credit) is in effect for the taxable year.
- (b)(5) ((5) Repealed. Pub. L. 94-455, title X, Sec. 1053(d)(2), Oct. 4, 1976, 90 Stat. 1649.)

- (6) Regulated investment companies and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subject to tax under subchapter M of chapter 1.
- (7) A DISC (as defined in section 992(a)(1)).

(c) Includible insurance companie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subsection (b) -

- (1) Two or more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each of which is subject to tax under section 801 shall be treated as includible corporations for purposes of applying subsection (a) to such insurance companies alone.

(2)(A) If an affiliated group (determined without regard to subsection (b)(2)) includes one or more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taxed under section 801, the common parent of such group may elect (pursuant to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to treat all such companies as includible corporations for purposes of applying subsection (a) except that no such company shall be so treated until it has been a member of the affiliated group for the 5 taxabl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taxable year for which the consolidated return is filed.

(B) If an election under this paragraph is in effect for a taxable year -

- (i) section 243(b)(3) and the exception provided under (FOOTNOTE 1) 243(b)(2) with respect to subsections (b)(2) and (c) of this section,
- (ii) section 542(b)(5), and

(iii) subsection (a)(4) and (b)(2)(D) of section 1563, and the reference to section 1563(b)(2)(D) contained in section 1563(b)(3)(C), shall not be effective for such taxable year.

(d) Subsidiary formed to comply with foreign law

In the case of a domestic corporation owning or controlling, directly or indirectly, 100 percent of the capital stock (exclusive of directors' qualifying shares) of a corpor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a contiguous foreign country and maintained solely for the purpose of complying with the laws of such country as to title and operation of property, such foreign corporation may, at the option of the domestic corporation, be treated for the purpose of this subtitle as a domestic corporation.

(e) Includible tax-exempt organizations

Despit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subsection (b), two or more organizations exempt from taxation under section 501, one or more of which is described in section 501(c)(2) and the others of which derive income from such 501(c)(2) organizations, shall be considered as includible corporations for the purpose of the application of subsection (a) to such organizations alone.

(f) Special rule for certain amounts derived from a corporation previously treated as a DISC

In determining the consolidated taxable income of an affiliated group for any taxable year beginning after December 31, 1984, a corporation which had been a DISC and which would otherwise be a member of such group shall not be treated as such a member with respect to -

- (1) any distribution (or deemed distribution) of accumulated DISC income which was not treated as previously taxed income under section 805(b)(2)(A) of the Tax Reform Act of 1984, and
- (2) any amount treated as received under section 805(b)(3) of such Act.